

국내입법의견조사 94-1

# 종교법인법

1994. 3.

연구책임자 이준우 (수석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 목 차

## 제1편 종교법인법

I. 문제의 소재 .....	7
II. 각계의 의견 .....	12
1. 종교법인법의 제정여부 .....	12
2. 성직자 과세 .....	16
3. 종교재산의 비과세 범위 .....	18
III. 입법방향 .....	23
1. 쟁점사항의 정리·평가 .....	23
2. 입법방향 .....	27
IV. 참고자료 .....	32
1. 종교단체 현황 .....	32
2. 종교단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 .....	33
3. 기독교재산관리법안 .....	34
4. 일본 종교법인법 .....	36
5. 외국의 입법례 .....	38

## 제2편 최근입법의견 동향 및 최신법령 소개

I. 최근입법의견 동향 .....	43
1. 최근입법의견 목록 .....	44
2. 최근입법의견 요지 .....	48
II. 주요입법예고법률안 .....	86
1. 주요입법예고법률안 목록 .....	86
2. 주요입법예고법률안 내용 .....	87
III. 최신법령 목록 .....	97

제 1 편  
종교법인법



## I. 문제의 소재

종교단체에 관한 법적 문제는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와 관련하여 일반 공익단체와 어느 정도 구별하여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 단체로서의 활동에 대한 감독 문제, 종교재산에 대한 소유 및 관리의 문제로 대별된다. 첫번째의 문제는 종교활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 내지 보조, 불간섭의 정도 문제이며, 두번째의 문제는 단체등록이나 법인화에 대한 강제성 등을 통한 감독의 정도 문제이고, 세번째의 종교재산문제는 법인 아닌 종교단체의 재산소유 형태를 민법상의 총유로만 볼 것인가 종교단체의 내부규약에 따르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대표된다. 이는 구체적으로 세제상의 비과세혜택, 보조금 지원 등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 내지 보조의 문제, 각종 법률상의 규제에 대한 특례 인정, 종교단체의 내부적 법률관계와 외부적 법률관계에 대한 종교적 관습과 규약의 존중 문제 등으로 나타난다.

현행법상 종교단체는 비영리법인의 형태(민법 제32조), 법인격 없는 재단 내지 사단의 형태로 대별된다. 후자의 경우 종교단체는 일반적인 사회단체와 구별하여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제2조)<sup>1)</sup>, 따라서 사회단체로서의 감독·관리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전자는 당연히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게 되고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다. 종교단체에 관한 법적 문제는 이러한 두 가지의 법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종교단체의 다양한 법률관계를 종교의 자유라는 대원칙하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는가 하는 문제와 종교의 자유 본질에서 벗어난 종교적 단체<sup>2)</sup>의 규제문제로 압축된다. 법인인 종교단체는 종교활동에 대한 국가의 보장을 확대하는 문제가 중점이 되고, 비법인 종교단체

1) 이 법은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을 1994년 1월 7일 개정 공포하여 동년 3월 1일 부터 시행됨. 주요 개정 골자는 ①종전의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②회원수가 50인 이하인 사회단체인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며, ③연 2회 정기보고제를 폐지하고, ④제명(題名)을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로 하는 것 등이다.

2) 여기서 '종교적 단체'란 단체의 성격이 신앙, 예배 및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교단체로 볼 수 없는 종교활동을 표방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그 단체가 「종교단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것을 설립 허가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3조 1호). 「종교단체」란 종교의 교의를 펼치고 의식행사를 치르며 신자를 교화육성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①예배의 시설을 갖추는 신사·사찰·교회·수도원 그밖에 이와 비슷한 단체 ②

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감독의 문제로, 종교단체의 입장에서는 종교재산의 관리 문제가 중점이 된다. 종교적 관습과 자치규약의 존중문제는 비법인 종교단체의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 판례<sup>3)</sup>는 원칙적으로 종교재산에 관하여는 종교단체 내부의 자치법규(중헌, 장정, 헌법 등)를 적용하지 않고 민법의 총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관계의 분쟁은 종교단체의 규약과는 무관하게 구성원인 신자들의 결의로써 해결하도록 소극적 사법권 행사의 입장에 머무르고 있다.<sup>4)</sup>

헌법상 종교의 자유(제20조)가 보장되고 있고, 종교단체는 민법상의 비영리 법인으로서 법인화 여부는 강제되지 않으며(민법 제32조), 사회단체로 등록이 강제되지 않는 임의단체이다(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제2조). 또한 이러한 성격에 근거하여 세법상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그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별표 참조). 따라서 종교단체의 설립과 활동은 법인화된 경우에만 주무관청인 문화체육부가 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의 감독을 받을 뿐 사실상 법적 감독과 규제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그 재산관리 형태는 재단법인, 명의신탁, 개인 명의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고, 재단법인의 경우에도 유지재단이란 독특한 형식에 따라 교단 내지 종단이 산하 개별 종교단체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와, 교구별 재단법인, 개별 종교단체별 재단법인으로 다양하다. 또한 비법인 종교재단의 경우 단체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와 명의신탁에 의한 경우 등으로 나뉜다. 이는 결국 각종 세법상의 문제가 「고유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한 재산으로서의 비과세 문제로 직결된다.

아울러 불교와 유교의 경우 각각 전통사찰보존법(1987년)과 향교재산관리법

---

이같은 단체를 포함하는 교하·종파·교회·수도회·주교구 이밖에 이와 유사한 단체(동법 제2조)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적 단체의 사회적 문제는 종교의 자유 외연에 관한 문제이며, 종교단체성의 인정 기준에 관한 문제이므로 별론으로 한다.

- 3) '교회가 소속된 老會의 憲法에 「支教會의 재산은 노회의 維持財團의 소유로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교회재산은 그 교회교인의 소유에 속한다'(대판 1973.8.21, 73다 442,443 참조);이 전의 판례(대판 1962년.1.11, 민상395; 1970.2.10, 67다 2892등)는 '습有'라고 하였으나 현재는 '總有'로 일관된다.
- 4) 지역교회 중심인 일반 교회와는 달리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조직을 가진 구세군교회에 관하여는 그의 재산은 구세군유지재단의 단독소유에 속한다고 하고 있다: 대판 1986.7.8, 85다카 2648.



(1962년)에 의하여 각각 전통사찰재산과 향교재산을 재단법인으로 또는 이와 유사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전통사찰이 아닌 일반 사찰의 경우는 다른 종교단체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독교계에서는 종교간의 형평성을 근거로 「기독교재산관리법안」(상세한 것은 후술의 Ⅳ. 참고자료. 3. 기독교재산관리법안 참조 바람)을 제안하고 있다.

종교계가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개별 종교단체에 대한 종교활동의 최대한 보장과 종교단체 일반에 관한 법적 관리·감독간의 조화점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세분화하면, ①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화할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의 주무관청의 감독마저 배제하고 임의단체로서 인격없는 재단 내지 사단으로 활동할 것인가 하는 문제, ②종교법인법(가칭)과 같은 특별법을 통하여 모든 종교단체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기준하에서 합리적인 감독과 보장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 ③세법 기타 종교 관련 특별법령에서 종교활동의 최대한 보장을 위한 법개정 내지 적용상의 혜택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법인화와 관련하여 본다면, 종교단체로서의 법적 성격과 교단 내지 교파의 총단과 개별 조직(사찰, 교회 등)간의 일체성 확보가 문제되며, 종교 관련 특별법령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와 종합토지세 등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의 재산관리 및 활동보장이 연관된다. 그리고 금융실명제와 관련하여서는 법인화의 형태에 따른 총단과 개별 산하단체, 성직자와 개별 단체간의 명의문제가 발생한다. 궁극적으로는 종교단체의 합리적인 관리·감독의 문제와 각 종교단체의 재산관리 및 보장을 통한 종교활동의 보장으로 집약된다.

외국의 입법례는 종교단체 일반에 관한 특별법으로써 종교법인을 다루는 경우와, 우리나라처럼 사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자율에 맡기면서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의 예로는 일본의 '종교법인법', 독일 각 주별로 제정된 '교회법(Kirchen Gesetz)'을 들 수 있다. 종교단체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도 미국, 일본, 우리나라처럼 일반 세법상의 규정에 비과세조항을 두는 경우와 독일과 같이 '교회세법(Kirchensteuergesetz: KiStG)'을 아울러 두는 예

가 있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1951년 제정 공포되어 88년 현재 22만 9천여개의 종교단체중 80%인 18만 3천여개의 종교법인이 설립되어 있다. 사법인과 공익법인적 성격을 띤 일본의 종교법인은 개별 사원·교회 등의 단위종교법인과 천태종·천리교 등 상위의 포괄적 종교단체들인 포괄종교법인이 있다. 설립 자체가 강제나 허가에 의하지 않고 종교단체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임의법인인 셈이며 설립요건만 갖추면 쉽게 등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되, 종교단체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성을 확보시키고 법인의 민주적 운영까지 유도하고 있어 종교재산의 합리적 운영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독일의 교회법은 독일 기본법 제140조에 의한 Weimar헌법상의 교회조항(제136 -9,141조) 준용에 따라 주법으로 제정·적용되고 있는데, 국교라는 종교적 배경을 가졌던 연혁적 이유로 종교법인은 공법인의 성격을 가지지만, 임의법인인 점과 권리·의무규정은 일본의 경우와 별 차이가 없다.

현재 종교법인의 허가, 감독권을 갖고 있는 문화체육부에는 불교 30개, 개신교 93개, 카톨릭 50개, 유교 15개, 기타 11개 등 총 1백99개의 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문체부 종교단체 교세현황조사에 따르면, 불교 43개 종단, 개신교 1백 29개 교단, 카톨릭 15개 교구, 기타 42개 단체 중 불교사찰의 경우 법인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고, 개신교 장로교단은 교파만도 1백개가 넘는 등 카톨릭을 제외하고는 개별단체의 법인화가 미진한 실정이다. 이들 중 교회와 사찰만 보더라도 각각 4만여개, 1만개가 넘으며, 이들 대부분은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종교계의 연간 헌금 및 시춧돈은 3천4백억원(86년 경제기획원 서비스업 통계조사)부터 조단위(91년 통계청조사)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종교계는 자유 방임적인 불간섭의 입장 요구와 임의단체로서 비법인으로 활동하는 관행을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여건의 변화에 따른 종교계 자체의 현실적 필요성 인식에 의해서 종교법인법(가칭) 또는 기독교재산관리법(가칭)과 같은 특별법의 제정에 의한 종교단체의 활동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직접적인 동기는 금융실명제, 토지초과이득세, 종합토지세의 실시에 따른 현실적인 법적 문제가 종래의 비법인으로서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

있다. 세금의 부과로 인한 종교재산의 잠식, 종교단체의 재산과 성직자 개인 소유재산의 혼재로 인한 관리상의 문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함께 전통사찰보존법의 적용을 받는 불교재산과 향교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유교재산, 기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내지 단체로서 규율되는 종교재산간의 형평성 문제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기독교재산관리법(가칭)의 제안으로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종교법인법 제정여부는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현안으로 종교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며, 궁극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실정법과 현실 사이에서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최대한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으로 종교법인법의 제정여부를 둘러싼 각계의 입법의견을 요약 정리하고 분석·검토하고자 한다.

즉, 1)종교법인법의 제정여부(필요성), 2)종교법인의 성격, 3)종교법인의 관리, 4)성직자과세여부, 5)종교재산의 비과세 범위, 6)기타 종교간의 형평문제 등을 중심으로 이를 검토한 후, 입법안과 현행법을 분석하고 입법방향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 Ⅱ. 각계의 의견

### 1. 종교법인법의 제정여부

#### 〈 자율성 확보 〉

##### ○ 법보신문 사설

종교법인법은 형행 민법상의 사단·재단 등 법인과는 확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사단이나 재단법인은 사람과 돈에 따라 법인이 형성되기 때문에 종교자율을 완전히 보장받기는 어렵다. 그러나 종교법인법이 제정된다면, 그 성격은 목적법이어야 한다. 즉 각자의 종교행위에 합법성을 부여받기 때문에 공유재산의 사유화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불교재산관리법 폐지이후 불교교단이 50여개로 늘어난 사실은 이 종교법인법의 제정이 늦어지기 때문이라고 본다. 만약 종교법인법이 제정될 수 있다면 불교의 각 종파는 자율적으로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현행 전통사찰보존법도 심각한 문제가 상존하다. 전통사찰보존법의 범주에 들지 않는 각급 사찰들을 이대로 방치하였을 때 사유화될 위험성마저 있다고 본다.

또 기독교등 다른 종교가 임의와 자율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음에 반하여 유독 민족종교인 불교만이 타율적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점은 어불성설이다. 언필칭 종교자율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종교법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또 종교간의 반목과 갈등을 법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신정부는 하루 빨리 이 모든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종교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법보신문 93.9.6., 2면).

##### ○ 손성(동국대 불교과 교수)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을 기피하고 법인격없는 사단이나 재단으로 영위되는 대부분의 종교단체는 재산분쟁이 생기면 지분권을 가지지 않는 '총유'로 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재산싸움으로 번지는 결과를 빚게 되었고, 더구나 인격없는 재단의 경우는 부동산 이외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신탁법리를 이용

하여 설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반면 더욱 중요한 점은 민법상의 규정과 행정청의 준칙에 의거하여 종교관련법인이 설립되었을 경우 종교단체의 행위가 '종교상의 행위' '물질상의 행위'로 구분되어 자칫 행정청의 통제가 '종교적 행위'마저 간섭할 소지를 안고 있다. 여기서 특히 불교계는 전통사찰보존법의 통제를 받고 있어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종교계에 과정의 정상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경우 우선 법제의 미비점이나 종교간의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으면 이를 시정해 주어야 한다. 불교계가 안고 있는 현안인 법규의 미비와 경쟁제한적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통사찰보존법의 폐지와 함께 종교에 관한 통일적인 기본법인 종교법인법을 제정하는 방법이다. 국가권력이나 행정청의 통제일변도가 아닌 종교법인의 자율에 맡기는 내용으로서의 법개정이다. 그래야 극렬한 재산분쟁과 불건전하고 불투명한 자산운용에서 벗어나 떳떳하게 맡겨진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종교성과 관련한 편향된 종교정책 존재여부에 대한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치적 법적 기초가 마련되는 것이다(제10대 조계종 중앙종회 종우회주최, 「종우회 정책토론회」, 93.10.4).

#### ○ 임춘원(국회의원)

기독교재산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관리와 보호를 위해서는 관련 세법을 개정하거나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고 교회 재산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선 「기독교재산관리법」(가칭)이 제정되어야 한다. 기독교재산과 관련, 문화체육부가 관할하여 기독교 재산으로 인정, 비과세 또는 과세 유예조치 등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국민일보, 94.2.18., 26면).

#### ○ 정병조(동국대학교수)

종교법인법은 현행 민법상의 사단·재단법인과는 달리 일종의 목적법으로서 모든 종교인이 각자의 종교행위에 합법성을 부여받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각 종파의 자율적 가입이 가능하여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을 때 종교재산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그만큼 줄일 수 있을 것이다(법보신문 93.8.30., 9면).

###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의 자기갱신과 개혁의 정신을 다시 불러 일으키는 차원에서 '각각의 교회는 개인소유로 된 종교재산을 소속교단의 재단에 환원귀속시키며' '선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체의 사치스런 시설을 금하고' '과거 정치권력과 유착하여 취득한 부당한 부동산 및 재산이 있다면 한국의 모든 종교가 종파를 초월하여 사회에 환원하고 깨끗한 종교생활의 풍토를 회복하기를 권고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선언문을 발표함(「교회갱신을 위한 한국교회의 입장」, 93.6.7).

### ○ 한보광(동국대 선학과 교수)

종교가 제기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종교법인법의 제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제6회 한일불교학술교류회의 주제발표「미래사회의 승가의 위상과 역할」, 93.11.4; 법보신문 93.11.8., 9면).

## < 세법상의 혜택 확보 >

### ○ 기독교재산관리법제정추진위원회

교회가 종교활동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또는 과세유예조치를 해주어야 하며, 기독교의 금융자산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납세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과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아울러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모든 교단 및 개교회 명의로 등기완료된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종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회재산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기독교재산관리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와 골자로 「기독교재산관리법(안)」을 작성, 공청회를 개최중이며, 이를 임시국회에 반영시킬 계획임(국민일보 94.2.18., 27면, 동 청주지역 공청회 발표문)

###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현재 많은 사찰이 토초세·종토세·금융실명제 등으로 혼란과 부담을 안고 있

다.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종교법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불교재산에 대한 과세와 관리에 따른 법적문제에 대한 질의서’ 93.9.15 ; 법보신문 93.9.27.,11면).

#### ○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

현재 조계종은 현실적으로 25개 교구가 각자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찰단위의 독립된 관리 및 재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종단단위의 총괄적인 관리는 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으로 등록하여 유지재단형식으로 행하고 있다. 조계종 단 이름으로 법인화해야 하는지 각 교구별로 해야 하는지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각 전통사찰의 경우는 전통사찰보존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별도로 종교법인법을 제정할 현실적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는 않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각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및 토지초과이득세가 문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교재산으로서의 보호를 바란다(제10대 조계종 중앙종회 중우회주최, 「중우회 정책토론회」, 93.10.4).

#### 〈관리·감독의 합리성〉

#### ○ 문화체육부

전국에 4만여개나 되는 교회와 1만개가 넘는 사찰이 정부에 등록된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여서 감독을 강화할 근거가 없고, 일본처럼 종교법인법을 제정하는 문제는 종교일각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있지만 보다 분위기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중이며, 현재로서는 법제정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국회문공위 문화체육부 감사 답변, 93.10.4; 한국 93.10.6, 3면).

#### ○ 박종웅(국회의원)

현재 각 종교의 종단들은 거의 대부분 재단법인(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관계부처에 재산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선 사찰이나 교회, 산하 종교단체들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모든 종교단체에 사단 및 재단의 성격을 함께 보유한 혼합법인 형태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중

교법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국회 문공위 국정감사 질의, 세계일보 93.10.20.,17면: 한겨레 93.10.22.,2면).

### ○ 한겨레신문 사실

현행 법체계상 종교단체는 사회복지단체나 학술연구단체와 똑같이 취급되고 있어 '비업무용'에 관한 한 별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금융실명제 도입 때 대부분 교회가 세금납부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지 못해 동창회와 같은 임의단체 취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교계 한쪽에서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성격을 갖는 종교법인에 관한 별도의 법을 제정하자는 논의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종교법인법 제정 논의는 진작 대두되었지만 종파간 이해가 엇갈리고 "법제정 과정에서 정부의 간섭을 자초한다"는 논리에 밀려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실시와 부동산 실명제 움직임으로 봐서 어차피 교회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면 차제에 교회와 세금, 그리고 정부의 관계를 명확히하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건전한 종교활동을 보장하고 종교단체나 성직자의 빚나간 특권화를 막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종교계로 흘러들어가는 '검은 돈'의 출처를 밝혀 금융실명제의 내실을 다진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만, 한가지 종교법인법 제정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끼어들 위험성은 당연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종교법인법 제정문제는 종파나 종단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하여 광범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한겨레 93.11.29.,3면).

## 2. 성직자 과세

### ○ 홍재형(재무부장관)

성직자의 경우 매달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선교활동비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고용대가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학교나 자선단체, 학술단체



등 다른 공익단체와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여 나아가겠다(국회 재무위 국정감사 답변, 평화신문 93.11.7.,3면).

### ○ 천주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성직자의 갑근세 납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그 실제적인 방안을 서울을 비롯한 수원, 전주교구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실무진들을 통해 마련한 다음 차기 주교회의 정기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평화신문, 93.10.24.,4면)

### ○ 안경렬 신부(서울 역촌동본당 주임)

성직자라는 특수 신분과 성직자가 받는 돈의 성격을 논하기에 앞서, 성직자라고 할 지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납세의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고 본다. 성직자의 납세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성직자가 성무 수행을 위해 받는 돈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성직'도 하나의 직업으로 보고 또 그에 따른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그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둘째, 성직자가 받는 돈은 신자들의 기부금 형태에서 나온 것인데 그 돈은 일차적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난 돈이다. 성직자가 그 돈에 대한 세금을 낸다고 한다면, 세금을 낸 돈에 대해서 중복세하는 것이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점만 해결될 수 있다면, 성직자의 납세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성직자들의 소득으로 칠 수 있는 것으로 생활비와 성무활동비 외에 미사예물이 있는데 성직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미사예물은 제외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미사예물은 제외해야 할 것으로 본다(평화신문, 93.10.24.,4면).

### ○ 박종웅(국회의원)

성직자들의 수입에 대한 과세문제- 교회재정중 사회봉사활동비가 8%에 불과한데 반하여 교역자의 생활비는 38%나 되며, 일부 성직자들의 월수입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현실상황하에서 성직자의 무조건 면세는 불합리하다.

### 3. 종교재산의 비과세범위

#### < 직접 사용목적 재산의 확대 >

##### ○ 기독교 대한감리회

부목사, 전도사 사택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청원: 부목사, 전도사도 종교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이므로 교회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이들의 사택에 대해서도 당연히 비과세하여야 마땅하다 (93.9.6 청원; 월간목회, 1994.1월호 79-88면).

#####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선교관련토지 및 가옥과세에 대한 한국교회의 건의문을 국무총리에 전달, 적극 시정요청을 함(93.7.30.; 법보신문 93.8.16., 4면)

##### ○ 조계종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비과세·감면)와 동법시행령 제4조(비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전통사찰 소유의 토지가 비과세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종합토지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8(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항에 전통사찰보존법상의 부동산을 삽입, 비과세해 줄 것도 요청(법보신문 93.8.16., 4면).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4항의 유희토지의 예외조항에 따라 전통사찰소유의 토지는 종교고유목적에 위해 사용되는 토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전통사찰보존법 자체가 전통사찰의 문화재적 기능 및 불교고유의 활동을 정부가 보장해 준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각종 허가행위는 그대로 불교고유 목적에 합당한 행위임을 주무부서가 인정해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개인이나 영리법인이 소유한 부동산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법보신문 93.8.2., 1면).

## 〈일반 종교재산의 비과세 범위〉

### ○ 재무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과세평등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사안이다(93.4.1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토초세 관련 질의에 대한 5.1일자 회신).

### ○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회가 소유한 토지, 임야 및 종교시설에 대한 과세의 개선을 그 취지로 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교회관련 세법의 개정에 관한 청원을 기독교를 대표하여 기독교 대한 감리회 표영은 감독명의로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에 반영하여 주기를 촉구함.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교회보유 임야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및 교회 보유토지 (임야제외)에 대한 과세 유예기간 설정 청원: 교회가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는 5년간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유예기간을 정하여 주기 바란다.
- ② 종합토지세, 등록세, 취득세의 과세유예기간 설정 및 연장 청원: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교회가 종교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등록세, 취득세의 과세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 및 설정하여 주기 바란다.
- ③ 택지의 이용개발 의무기간 연장 및 교회 부목사, 전도사의 사택 취득 허용 청원: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교회가 종교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 의무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교회 경회에서 부목사, 전도사의 사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93.9.6 청원; 월간목회, 1994.1월호 79-88면)

###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제와 관련하여 종교간 형평을 유지해 줄 것과 종교고유 목적사업을 통한 선

교활동에 저해가 없도록 현행 세제를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동협의회 교회재산문제대책위원회 및 23개 개신교 교단장대책회의 건의; 크리스찬저널 93. 12월호, 24-25면)

###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투기와 비생산적 부분으로의 자금 흐름을 차단키 위해 실시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비영리 단체인 사찰의 부동산에 증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과중한 세부담이 불교의 신행활동을 심하게 위축할 뿐 아니라 사찰운영 자체가 문제가 되어 불가피하게 산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와 있는 점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이나? 민족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을 길이 보존 민족문화의 향상을 기한다는 전통사찰보존법과 전통사찰보존을 위해 쓰이는 해당재산을 처분해야만 비로소 납세할 수 있는 상반된 모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요구(‘불교재산에 대한 과세와 관리에 따른 법적 문제에 대한 질의서’ 93.9.15 ;법보신문 93.2.6.,11면).

### < 금융실명제 관련 >

#### ○ 기독교 대한감리회

- ① 종합토지세의 교회별 구분과세 청원: 교단 및 노회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실상 소유자인 개별 교회별로 종합토지세를 구분 과세하여 주기 바란다.
- ②교회, 지방회, 총회 또는 연회본부에 고유번호 부여 청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법인 산하에 있는 각 교회, 지방회, 연회본부에 납세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93.9.6 청원; 월간목회, 1994.1월호 79-88쪽 )

#### ○ 임춘원(국회의원)

개인이 상속받은 임야나 농지, 종중이 소유한 임야나 농지는 사용여하에 불문

하고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교회가 실질적으로 필요하여 소유한 임야나 농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원칙에 위배된다. 정부가 불교 재산은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39조에 의거 관람료를 징수하도록 하여 일정한 수입원을 제공하고 임야에 대해서도 산림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보전임지, 사찰림으로 지정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교회가 소유한 임야에 대해서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것은 헌법 제 11조의 평등권에도 위배되고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에도 침해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종교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하여 보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5년간 과세 유예기간이 설정되도록 현행 토지초과이득세법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본래 종교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주요종교 즉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에 대하여는 형평을 고려하여 입법활동에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토지초과이득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 소개서, '93정기국회 재무위원회).

○ 이호정(국회의원)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교회에까지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데 법 제정을 통해 교회재산이 관리되어야 한다. 토초세 부과 등으로 한국교회 선교활동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국민일보, 94.2.18., 26면)

○ 손성(동국대 법대교수)

실명제의 또 다른 목적인 부패구조의 일소는 종교와 종교단체의 행위에도 예외가 아니다. 종교계에 과정의 정상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경우 우선 법제의 미비점이나 종교간의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으면 이를 시정해 주어야 한다(종우회 주최 정책토론회『금융실명제가 불교에 미치는 영향』, 93.10.4).

○ 김동수(세무사)

현실적으로 금융실명제하에서 사찰삼보정재는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주무관청인 문화체육부에 법인등록을 해야 한다(종우회 주최 정책토론회『금융실명제가 불교에 미치는 영향』, 주제발표 요지, 93.10.4).

○ 장석화(국회의원)

교회가 종교활동 고유 목적사업에 필요해 취득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비과세 또는 과세 유예조치를 해주고, 개신교회 금융자산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해선 납세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과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국민일보, 94.2.18., 26면)

〈 종교단체의 법인화의 현실적 문제점 〉

○ 조종래(조계종 재무과장)

조계종을 법인화하자는 논의는 계속되어 왔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25개 교구가 각자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계종단 이름으로 법인화해야 하는지 각교구별로 해야 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주지교체시 인계 절차와 재임중 사망시 그 재산이 속가상속권자에게 넘어가는 것도 삼보정재의 불교교리에도 맞지 않다(종우회 주최 종책토론회『금융실명제가 불교에 미치는 영향』, 93.10.4).

○ 법등스님(직지사 종회의원)

몇년 전에 조계종 전체를 단일법인으로 하려니까 등기세만 2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종우회 주최 종책토론회『금융실명제가 불교에 미치는 영향』, 93.10.4).

○ 법보신문 해설

삼보정재의 유출을 근원적으로 막으려면 현행법상으로는 모든 사찰재산을 묶어 재단법인화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전통사찰의 경우 전통사찰보존법과의 상충관계가 있어 법인설립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통사찰보존법은 전통사찰 소유 부동산의 양도 기부 등에 있어 사전에 문화체육부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다(법보신문 93.8.23., 2면).

### Ⅲ. 입법방향

#### 1. 쟁점사항의 정리·평가

##### (1) 제정의 근거와 종교법인의 성격

종교법인법의 제정에 관한 각계의 입법의견은 정부의 의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다시 그 제정 필요성의 근거 내지 이유에 따라서 세분하면, ①종교단체의 자율성 확보 ②세법상의 비과세 혜택 확장 ③종교재산의 관리 및 종교단체의 감독에 대한 합리성 확보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는 각계가 처하고 있는 입장의 차이와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관점이 동일하지 않는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종교법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 차이는 특별법으로써 규정되는 종교법인의 법적 성격에 있어서도 다르게 된다. 즉, ①현행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일종으로서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하는 입장, ②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혼합적 성격을 가진 특수한 성격의 법인으로 하는 입장, ③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재단법인적 성격의 독립된 종교재산으로 하는 입장 등으로 나뉜다.

비영리법인으로서 학술·자선·기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구분하여 종교단체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 각계의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법인의 성격을 민법상의 법인과 동일한 것으로 하되 법률상 취급만 달리하는 입장과 혼합적 성격의 법인으로 하는 입장으로 나뉜다. 전자에 의하면, 여전히 종교단체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해당 단체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입법 정책에 따라 재단 또는 사단적 성격이 주된 형태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종교법인법과 같은 특별법을 염두에 둔 입법의견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되고, 종교법인법의 제정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과 전자의 특별한 보호에 중점을 두는 입장에서는 민법의 경우와 다르지 않게 된다. 한편, 전통사찰보존법과 향교재산관리법 및 기독교재산관리법안의

경우는 재단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종교법인의 법적 성격의 문제는 종교단체에 대하여 법인화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전히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형태로 많은 종교단체가 활동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종교단체가 일부는 재단으로, 일부는 사단으로 운영된다는 이원성을 막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법률적 취급에 있어서 그 법리를 달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형평성과 일관성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게 된다. 재단의 경우와 사단의 경우가 그 의사결정 및 운영상의 단체논리가 다르며, 더구나 종교단체의 내부적 자치규약 내지 관습의 구속력에도 다르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교단체에 대하여 반드시 법인으로 등록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법적 문제 또한 작은 것은 아니다. 종교법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각계의 의견들은 대부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적 분쟁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의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은 법률상으로 권리능력을 가지나, 법인 아닌 종교단체는 해석상 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재산의 소유와 관리문제에 있어서도 법인은 법인 명의의 단독소유이지만, 법인 아닌 종교단체는 등기능력은 인정되므로 단체 명의로 등기할 수 있으나(부동산등기법 제30조1항) 그 소유형태는 사단은 사단원의 총유로, 재단은 재산출연자의 신탁재산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내재하게 된다.

## (2) 종교재산의 비과세 범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법인세법 제1조 1항 6호),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에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토지’(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종교재산의 비과세 범위에 대하여 종교계의 의견은 이를 넓게 해석하여 전통사찰 소유의 토지, 교회 보유 임야와 목회자 사택, 종교활동 고유 목적사업에 필요해 취득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인정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종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개인이나 영리법인이 소유한 부동산과 구별하고, 나아가 동일한 비영리법인인 학술·자선 등의 단체와도 특별히 구별하여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토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이에 따른 과세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사업목적의 달성에 필수적인 성직자의 범위에 관하여도 넓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비과세되는 종교재산의 범위는 종교법인의 권리능력 내지 대표자의 업무범위 결정법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 범위의 확대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이 점에 대한 고려는 각계의 입법의견에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진다(민법 제 34조). 「목적의 범위내」에 대한 해석은 i) '적극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내'라고 좁게 해석하는 견해와 ii) '소극적목적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라고 넓게 해석하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판례 및 소수설의 입장이 전자에 해당하고, 다수설의 입장이 후자에 해당한다. 민법 제34조의 규정은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대표기관의 목적범위 밖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민법학자들의 통설이다. 일본민법 제 43조의 규정에 대한 해석도 판례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일치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 권리능력의 제한 규정으로 보고 있다. 독일민법 제26조의 경우 정관에 정한 목적은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지 않음은 물론 법인이사의 대리권도 당연히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사의 대리권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영미법의 *ultra vires*(越權無效)이론도 거의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종교법인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범위에 속하는 재산을 비과세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비과세되는 종교재산의 범위가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한정되고, 이는 '적극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산'과 의미가 동일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종교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종교재산에 대한 비과세범위의 확대는 현행법의 해석과 판례와는 충돌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 (3) 성직자 과세문제

조세법률주의와 세법상 명시적 조항이 없다는 점, 교회의 수입원인 헌금에서 지불되는 성직자의 급료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점, 성직의 특수성 등에 근거해서 과세를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 왔다(상세한 것은 한국법제연구원 「국내입법의견조사」 제4호 참조). 그러나 현재는 천주교, 기독교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으로 성직자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종교계의 흐름은 찬성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아직 명시적인 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진 납부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성직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강제 부과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 문제는 유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세법상의 문제이지 종교법인법상의 문제로 삼을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

### (4) 종교간의 형평, 법인화의 문제점

불교재산관리법과 관련하여 기독교계에서는 종교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기독교재산관리법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비과세범위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기독교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동일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종교마다 각각의 재산관리법을 제정하여 이를 규율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기독교가 불교와 함께 최대 종파임에는 부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기타 종교단체의 재산과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종교단체가 다양한 형식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과 관련하여 법인화할 경우 그 절차 및 관련된 비용의 문제가 현실적인 법인화의 장애로 대두되고 있다는 주장은 일단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토지초과이득세, 종합토지세, 등록세, 재산세 등 과세의무자와 실질적 사용자가 동일하지 않은 교단 또는 교단의 유지재단 명의의 재산에 문제는 누진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법인화를 어렵게 하는 현실적인 요소이다. 개별 종교단체와 그 상위의 포괄 종교단체간의 관련된 재산의 세법과 종교법인법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만 하는 것이 법리이나, 각계의 입법의견은 오히려 분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법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

다는 것은 유의되어야 할 점이다.

## 5) 기타 종교단체의 내부규약과 실정법 관계

각계의견 속에 포함되어 주장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종교단체의 자치규약과 실정법과의 관계이다. 대법원 판례는 기술한 바와 같이 재산관계에 관한 한 사단의 총유로서 민법 규정을 적용할 것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기독교재산관리법안에서 보듯이 자치규약을 우선하는 입장과 일부 학자들의 견해가 있다. 이는 종교단체가 분열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재산문제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판례가 많음에서도 보듯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법적 문제이다. 이 점을 종교법인법으로 규정할 것인지 아닌지도 중요한 논점으로 된다고 하겠다. 일본의 종교법인법의 경우 종교단체의 자치규약과 관습을 존중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 2. 입법방향

이상의 각계 입법의견과 현행법 규정 및 외국의 입법례를 종합하여 종교법인법의 제정에 관한 입법방향을 요약·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입법의 형식과 종교단체의 법적 성격에 관한 문제는

- ①종교의 자유에 따라 법인의 임의성은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종교법인법을 제정하고, 민법상의 인격없는 재단 내지 사단으로도 보장하는 방안
- ②현행대로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법인화의 임의성을 인정하되, 현실적인 문제는 조세문제에 한하여 세법의 개정이나 해석으로 해결하는 방안
- ③각 문제되는 종파별로 특별법(재산관리법)을 제정하는 방안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안의 경우 종교간의 형평성 문제는 자연 해결될 수 있고, 관리·감독의 일원화를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인의 성격 규정에 따라 종교별 특성이 무시되어 내부관계와 외적 법률관계가 더욱 갈등을 일으킬 염려가 있고, ②안의 경

우 종교단체에 대한 특혜시비와 함께 종교단체의 운영은 자율에 맡기게 되어 법적 분쟁은 남게 된다. ③안은 현실적인 참여의식이 강한 종교단체만 그 혜택을 받게 되고, 각 특별법간의 형평성 문제도 당연히 내재하게 되지만, 각 종교의 특성과 관행 및 내부관계를 최대한 반영하여 당해 종교의 경우에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가 보장되고 있고, 민법(제 32조)상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설립의 임의성이 인정된다. 아울러 사회단체로서 등록대상이 되지 않으며, 국세법도 법인격 없는 종교단체를 법인으로 간주하여 적용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 비영리법인 내지 공익법인의 범위에 있어서 종교단체는 다른 공익법인과 동일한 지위로서 보장되고 있다. 현행법상 종교단체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세법상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나, 공익법인과 사회단체의 범위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과 세법상 공익법인과는 대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으면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 같은 개별법으로 규정되는 바는 없다.

이점에서 본다면, 종교법인법의 제정에 있어서 종교단체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가 선결되어야 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 같이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는 성격의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가로 입법적 필요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경우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일반과는 다른 성격의 보완규정을 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종교법인의 기본적 형태, 종교법인의 자율성 보장 정도, 내부적 자치규정과 실정법과의 관계 규정, 종교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재산관계 규정 등이 중요 요소로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행법과 별도로 종교법인법을 제정하려면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종교법인의 성격을 재단,사단 또는 혼합적 형태 어느 것으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종교단체 중 불교와 천주교의 경우 사원총회라는 의결기구가 없으므로 본질상 사단으로 구성할 수가 없다는 점, 재단으로 구성할 경우 사원총회로 볼 수 있는 신도의 집합체는 어떤 지위를 보장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따라

서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두 가지 형태를 하나의 법률에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재단법인을 기본 형태로 하고 사단법인의 요소를 절충할 것인가 양자의 것으로 집약된다. 일본의 종교법인법은 후자의 형태를 택하고 있다. 일원화를 위해서는 절충적 성격의 법인을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 경우 신자 집합체의 의사반영을 위한 배려는 반드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의 경우 민법에 의하게 하거나 종교법인법을 준용하도록 하게 될 것이다.

둘째, 종교법인의 자율성 보장을 공익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이와 구분하여 더 높은 자율성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후자의 경우 문제되는 부분은 주무관청의 감독권과 관련된다. 공익법인의 경우 업무감독, 이사의 취임취소, 설립허가의 취소, 감사,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 각종 보고의무 등이다.

종교법인의 자율성의 보장을 높이려면, 공익법인의 경우에 주무관청의 감독사항 중 이사의 취임취소, 감사,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대한 허가에 관한 부분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수준으로 하되, 각종 서류제출 및 보고의무는 반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재산의 등록과 변동에 대한 보고는 엄격히 하되, 이의 처분에 대한 법적 문제는 법인의 권리능력이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및 민법상의 법률행위의 효력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의하여 종교활동의 자율성을 가능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종교법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조항이다.

이는 종교법인법상에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범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둠으로써 공익법인과 구별하여 최대한 보장하는 데 그 의미가 있고,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자율성 확보와도 직결된다. 법인고유목적에 사용되는 재산의 범위와 기타 재산의 범위, 나아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가진 종교재산의 경우 문화재보호법과의 관계, 부동산 이외의 재산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개별 종교단체와 상위의 포괄종교단체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다.

단위 종교법인을 개별 종교단체로 하되, 상위의 포괄종교단체로서의 종단, 교구, 교단 등도 종교법인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개별 종교법인의 이에

대한 법적 독립성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는 종교법인의 정관사항으로 하되, 정관과 종교단체의 내부 자치규약(중헌, 장정, 헌법 등)과 종교법인법 및 민법과의 법적 적용관계를 가능한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법인격 없는 종교단체의 법적 문제이다.

원칙적으로 종교단체가 종교법인법이든 민법이든간에 법인화를 강제화할 수 없음은 헌법의 종교자유보장과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명백하다. 다만 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종교법인과 조화롭게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종교법인의 경우 재산은 단독소유로 되며, 그 활동은 법률과 정관에 정한 바대로 행하여진다. 그러나 법인격 없는 종교단체가 부동산등기법상 단체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활동할 경우, 그 소유형태는 사단의 경우 신자의 총유로, 재단의 경우 신탁자의 명의신탁재산으로 판례가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이원적 형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인격없는 종교단체에 관하여 종교법인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여섯째, 실정법과 종교단체의 내부규약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종교단체는 교리상 일원적인 자치규약을 가지고 있고, 이에 지배된다. 실정법과 정관의 해석에 있어서 종교단체에 관한한 이를 존중하는 규정을 두는 것도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

일곱째, 기존의 종교재산 관련 법령과의 관계

현재 전통사찰보존법령과 향교재산관리법이 있는 바, 종교법인법을 제정할 경우 이 법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를 흡수하는 방안이 있고, 그대로 두되 종교법인법에 위배되는 규정을 타법개정의 형식으로 삭제하는 방안이 있다. 전통사찰보존법의 경우 전통사찰의 재산을 명확한 재단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법리를 어느 정도 받아 들이고 있을 뿐이며, 향교재산관리법의 경우 재단법인으로 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법인법상의 법인을 절충적 성격으로 규정할 경우 이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종교재산의 비과세 범위 문제 등이다.

이는 가능한 한 현행과 같이 법체계상으로는 세법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원론적이라고 본다. 다만, 종교법인법상으로 종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확대함으로써 비과세범위를 사실상 확대하는 방안은 있을 수 있다. 비과세와 직결되는 성직자의 범위와 기본재산의 범위 등을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종교사업에 필요한 중추적 요소' 등의 해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반면에, 기본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 또는 종교사업목적에 직접 사용되는가 여부에는 종교간의 형평성과 공익법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법인법은 민법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제정되어야 하지 그 주목적이 종교재산의 관리나 세제상의 혜택을 목적으로 하여서는 그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법인격 없는 종교단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계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들을 가능한 법제도 안으로 편입되도록 입법되지 않으면 그 법적 실효성은 의문시될 것이다. 종교단체의 문제는 사실상 법인격 없는 종교단체의 합리적 운영과 건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데 관건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 Ⅳ. 참고자료

### 1. 종교단체 현황

- 종교별 교단 및 법인 현황 -

- 전통사찰보존법의 전통사찰: 8백50개 조계종(698), 태고종(94), 대한법회종(28),

구분 종교별	교 단	법 인			교당수	교직자수
		재 단	사 단	계		
불 교	36	33	24	57	10,634	30,811
개 신 교	113	93	50	143	42,589	84,554
천 주 교	1	50	5	55	918	8,561
유 교	1	15	4	19	233	18,240
천 도 교	1	1		1	151	5,106
원 불 교	1	1		1	404	8,388
대 중 교	1	1		1	91	232
기타종교	10	8	4	12	1,869	23,409
계	164	202	87	289	56,889	179,301

승종(2), 원효종(2), 보문종(2), 총화종(1), 화엄종(1), 법상종(1), 기타(21)

(93국정감사 종교관련 서면질의-답변: 법보신문 93.10.18., 3면)

\* 자료 : 「한국의 종교현황」, 문화체육부, 1993.

\* 1993 전국통계연감(한국도시행정연구소, 1993.3)

\* 중무행정(문화부, 1992.11)



## 2. 종교단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

### ◎ 동일 취급의 경우

구분	규정내용	근거
법인성	- 현행법상 「종교단체」는 '법인격 없는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국세기본통칙) (국세: 소득세, 법인세, 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가가치세, 축적소비세, 주세, 교통세, 전화세, 인지세, 가산세 등; 세법: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등)
특별 부가세	-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하여 법인인 경우와 동일하게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 부가세 면제를 인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1항 2호
등기능력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서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고 규정하여 등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30조 1항, 2항
지방세	①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시 취득세 비과세. ②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세율의 적용 ③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용도구분에 의한 등록세의 비과세에 준용) ④지방세 중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농지세, 사업소세.	지방세법 제107조 1호  동시행령 제79조 1항 1호  지방세법 제107조 1호, 제127조 1항 1호 등, 제163조 1항, 제184조 1호 제200조 1항 1호, 제245조의2 1항

◎ 등록법인에만 적용

구분	규정 내용	근거
부가가치세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 단체가 ...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 (동법 제39조의 공익단체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1,2호, 제39조
소득세법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지정기부금의 범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	소득세법 제49조, 동조 1항, 동법 시행령 제102조
주민세의 비과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	지방세법 제174조, 동 시행령 제130조의4 5호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찰립, 동유립	지방세법 제234조의12 7호, 동 시행령 제194조의8 1호

### 3. 기독교재산관리법안

- 기독교(개신교) 70개 교단장이 한국 기독교재산관리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정안을 마련, 94.2.17일 청주지역 공청회를 시작으로 임시국회에서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음.

-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의 부과와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자유로운 종교활동의 침해 및 과세상의 불이익을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회재산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본문 12조, 부칙 2조로 된 기독교재산관리법안을 제안.

- 주요 내용

○ 본문은 목적(제1조), 기독교재산의 정의(제2조), 적용범위(제3조), 재산등록(제4조), 관할청(제5조), 재산관리(제6조), 과세사항(제7조), 실명제 등록을 위한 고유번호(제8조), 택지의 이용개발 의무기간 연장(제9조), 목사, 부목사, 신

부,사관,전도사 사택취득(제10조), 개발제한구역의 이용(제11조),기독교회의 사업(제12조) 규정으로 되어 있다.

관할청	문 화 체 육 부
적용범위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기독교단, 선교를 위한 종교법인(사단,재단), 기독교 산하에 등록된 개교회 및 이에 준하는 단체, 교단에 등록된 모든 선교단체·교역자단체·평신도단체
기독교 재산	<p>기독교의 선교활동 고유의 목적사업과 신자의 종교교육,사회선교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각 개별 교단의 필요에 따라 조성보유하고 있는 동산,부동산 기타 재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산: 각종 현금,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기부금,부동산 매각 대금,기타 종교행위를 위하여나 이에 의하여 조성된 모든 자금</li> <li>- 부동산: 목적사업의 실현과 교직자(목사,부목사,신부,사관,전도사)의 주거생활을 위한 경내외 건물,공작물, 경내외 토지</li> </ul>
재산관리	각 교단의 대표자 또는 대표임원이 소속 개교회 또는 기독교 단체를 대표하여 관리, 개인명의의 재산은 제외
과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회자의 수입에 대한 과세 인정</li> <li>- 각 교단명의의 토지는 명의신탁관계임을 인정</li> <li>- 교단과 개교회간의 명의신탁의 설정 및 해제로 인한 등기는 등록세 비과세</li> <li>- 문체부장관이 고유목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농지 기타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를 5년간 유예조치하며, 임야는 비과세함</li> <li>- 고유목적사업용 취득토지는 종합토지세,등록세,취득세의 과세유예기간을 5년으로 함</li> <li>- 목회자(사관,전도사 포함)의 사택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및 교회 경내외에서 취득 허용.</li> <li>-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독교단체에 대하여 실명제 등록을 위한 납세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하도록 함.</li> <li>- 택지의 이용개발 의무기간을 5년으로 연장</li> <li>- 개발제한구역내에 교회 및 교육관의 건축 허용</li> </ul>
사업범위	기독교 선교 및 사회교화와 국민복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공익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개별 항목의 확정을 위하여 문체부장관이 각 교단 대표 또는 위촉자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4. 일본 종교법인법

○ 1951년4월3일 법률제126호로 제정, 1990년 12월 제9차 개정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음. 입법 목적은 종교단체가 예배시설 기타 재산을 소유하거나 이를 유지·운용하거나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업무 및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종교단체에 법률상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임.

- 제1장 총칙, 제2장 설립, 제3장 관리, 제4장 규칙의 변경, 제5장 합병, 제6장 해산, 제7장 등기, 제8장 종교법인심의회,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부칙으로 구성, 본문 89개조, 부칙 10개조로 되어 있음.

일본 종교법인법은 종교단체를 동법에 의해 설립한 종교법인과 민법상의 종교단체(인격없는 재단,사단)으로 설립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되, 종교법인의 특성상 특별한 규정들을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추가한 법률임. 따라서 종교법인의 설립, 법인격, 권리능력, 법인의 기관의 권한과 의무, 정관의 변경,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상의 규정과 동일하며, 상업등기와 관련된 등기절차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하고 있음.

종교재산의 범위, 단체의 범위, 사업의 범위, 허가취소 및 해산명령제도 등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규정과 다른 종교법인법상의 특별규정은 다음과 같다.

#### ○ 주요 내용

종교단체의 정의(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배시설을 갖춘 신사, 사원, 교회, 수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li> <li>• 이러한 단체를 포괄하는 교파, 종파, 교단, 교회, 수도회, 사교구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li> </ul>
관할청(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교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지사</li> <li>• 타 도도부현에 있는 종교법인을 포괄하는 종교법인에 대하여는 문부대신</li> </ul>
공익사업등(제6조)	<p>종교법인은 공익사업을 행할 수가 있다. 또 그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익사업이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당해 종교법인, 당해 종교법인을 포괄하는 종교법인, 당해 종교법인이 원조하는 종교법인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p>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사업 기타사업을 행하는 경우 그 종류 및 관리운영(수익처분의 방법포함)에 관한 사항(동조 7호)</li> <li>○ 기본재산, 보물 기타 재산의 설정, 관리 및 처분, 예산, 결산 및 회계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동조 8호)</li> </ul>
종교상의 규약·관습 존중의무 (제18조)	<p>법령·규칙외에 당해 종교법인을 포괄하는 종교단체가 당해 종교법인과 협의하여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며, 이에 위반하지 않는 한 종교상의 규약, 규율, 관습 내지 전통을 충분히 고려하여 업무 및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동조 5호).</p>
재산처분등 (제23,24조)	<p>종교법인(종교단체를 포괄하는 종교법인을 제외)이 중요한 재산처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한 경우 외에는 최소한 1개월전에 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그 주요행위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또는 재산목록에 기재된 보물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li> <li>○ 차입 또는 보증</li> <li>○ 주요한 경내건물의 신축, 개축, 증축, 이축, 철거 또는 현저한 외양의 변경</li> <li>○ 경내지의 현저한 외양 변경</li> <li>○ 주요한 경내건물의 용도 또는 경내지의 용도변경 또는 고유목적 이외의 목적에의 제공 등이며, 이에 위반한 경내건물 내지 경내지에 있는 부동산 또는 재산목록에 기재된 보물에 관한 행위는 무효이다.</li> </ul>
법인의 허가취소 (제80조)	<p>만법은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종교법인법은 취소사유를 '당해 단체가 종교단체가 아닌 경우' 라고 판단된 때에 설립허가로부터 1년이내로 제한하고 있다.</p>
해산명령 (제81조)	<p>재판소(법원)는 종교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할청(주무관청),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확정된 경우에는 해산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공공복리를 해할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li> <li>2. 제2조(종교단체의 정의)에 규정한 종교단체의 목적을 현저히 일탈한 행위를 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그 목적을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li> <li>3. 당해 종교법인이 제2조제1호(예배의 시설을 갖춘 종교단체)에 규정한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예비시설이 멸실되고 이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할 사유가 없이 그 멸실후 2년이상 계속하여 그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li> <li>4. 1년이상에 걸쳐 대표역원(이사) 또는 그 대리인을 결한 경우</li> </ol>

해산명령	5.인증결정서(허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당해종교법인에 관하여 '종교단체성'을 결하고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압류금지 (제83조)	종교법인의 소유에 속하는 그 예배의 용도에 제공되는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하여 예배용이라는 취지의 등기가 행하여진 것은 부동산 선취특권, 저당권 또는 질권의실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후에 원인이 발생한 사법상의 급전채권을 위하여 압류할 수 없다.

## 5. 외국의 입법례

국가명	종교법인법	종교단체의 지원	문화재의 지정
일 본	1951	금지(헌법20,21)	문화재보호법35 보조금
대 만	민법	세제혜택	사찰등기규칙, 사찰감독조례 (등기강제)
필리핀	.	금지(헌법8조8항2호)	.
영 국	교회법(국교) common law	교회세	지정요청에 의한 지정 보조금가능
서 독	Weimar헌법 137조(공법인 조세권)	교회법, 교회징수권	보조금 가능, 주 헌법, 문화재보호법
프랑스	1901년 종교단체법 (일반 공익 단체 성격)	1905년 -정교분리법(2조1항) 상 금지 -정교분리법시행 이전 의 모든재산은 국가, 도,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1905년 이후 건설된 교회, 기타 건축물은 사유 -비인가종교단체는 원 칙적으로 부동산 소유 금지 -공공근무 성직자의 봉급만 국비지급	문화재보호

스위스	민법상의 법인	종교 이외의 목적에 한하여 보조금	문화재보호법
이탈리아	헌법·라테란 조약 (등록여부 무관)	금지(헌법제20조)	지정시 국가가 관리
캐나다	종교단체법	세제혜택	지원없음, 교회자체관리
미국	뉴욕주경우만 종교법인법	일반비영리단체와 동일하게 취급	
그리스	* 교회·종교단체기본법(법률제1672/39/29-3-39호)- 국교는 공법인 기타 종교단체는 민법상의 법인		

: 일반법인과 동일, 소득세는 감경, 고정자산세는 영리법인과 동일

국가명	재산세	취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기부금	등록세
일본	면제 지방348조 2-3	면제 지방73조 4-1-2	면제 법인 4조1	면제 조특조40①	면제 법인37 3-3	면제 등록면4조2 (경내건물및 경내지등고정자산)
대만	면제 가옥세조례 15 1항3	감면 토지세 감면규칙 8조1항9관	경내지의 1%지가세 (평균지권 조례21조 1항3)	소득세법상 손금인정(동법 17조,36조), 증여세면제(유산과증여세법 3조 20조 3관)		
필리핀	면제 (재산세법)	취득세부과 증여세면제				
영국	성직자과세	자선단체로 인정시만 면제 또는 감세, 교회는 면제				
서독	교회세징수, 법인만면제 기타 단체는 과세	법인세, 취득세, 증여세면제(기본법140조)				
프랑스	종교세 무. 비영리 공익단체와 동일하게 조세부과					
스위스	사실상특전 일반법인과 동일, 소득세는 감경, 고정자산세는 영리법인과 동일					

이탈리아	교회세 무	현금 손금처리	
캐나다	면세(자선단체, 비영리단체와 동일 취급), 증여세 면제		
미 국	종교법인의 수입, 고정재산은 비과세원칙, 수익사업은 일반기업과 동일 * 모든 종교단체는 세무당국에 수지보고의무를 짐		



제 2 편

최근입법의견 동향 및 최신법령소개



# I. 최근입법의견 동향

## ○ 분류기준표

분 야	대한민국헌행법령집해당항목
憲 政	제1권1헌법, 2국회, 제2권3선거·정당
統一·外交·國防	제14권13군사(1), 제15권13군사(2), 14병무, 15국가보훈, 제47권44외무, 45조약(1), 제48권45조약(2), 제49권45조약(3)
內務·地方行政	제3권4행정일반, 제4권5국가공무원, 제10권10지방제도(1), 제11권10지방제도(2), 제12권11경찰, 제13권12민방위·소방
社會·文化·教育	제16권16교육·학술(1), 제17권17교육·학술(2), 제18권17문화·공보, 제38권38사회복지, 제40권40노동(1), 제41권40노동(2)
産 業·經 濟	제20권19재정·경제일반(1), 제21권19재정·경제일반(2), 제22권20내국세(1), 제23권20내국세(2), 제24권21관세, 22담배·인삼, 제25권23통화·국채·금융, 제30권28상업·무역·공업, 제31권29공업규격·계량, 30공업소유권, 제32권31에너지이용·광업, 제33권32전기·가스
農 林·水 産	제26권24농업(1), 제27권24농업(2), 제28권25축산, 26산림, 제29권27수산
建 設	제34권33국토개발·도시, 제35권34주택·건축·도로, 제36권35수자원·토지·건설업
科學技術·交通·遞信	제19권18과학·기술, 제42권41육운·항공·관광(1), 제43권41육운·항공·관광(2), 제44권42해운(1), 제45권42해운(2), 제46권43체신
環 境·保 健	제37권36공중위생·의사, 제38권37약사, 제39권39환경
法 院·法 務	제5권6법원, 제6권7법무, 제7권8민사법(1), 제8권민사법(2), 제9권9형사법

# 1. 최근입법의견목록

(1993.12.11. ~ 1994.2.10)

- ◎憲政 ..... 48
  - 국회법 개정의견
  - 정부조직법 개정의견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지방자치법 개정의견
  - 헌법 개정의견
  
- ◎統一·外交·國防 ..... 50
  - 6.25민간인전쟁피해자특별원호법(가칭) 제정의견
  - 통일특례법(가칭)제정의견
  
- ◎內務·地方行政 ..... 51
  - 경제행정조직개편관련 입법의견
  -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지방세법 개정의견
  - 행정정보공개법(가칭) 제정의견
  - 행정조직및행정구역개편관련 입법의견
  - 환경행정조직개편관련 입법의견
  
- ◎社會·文化·教育 ..... 53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교육공무원법 개정의견
  - 교육법 개정의견
  - 교육법시행령 개정의견

-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관련 입법의견
- 노동관계법 개정의견
- 방송관계법 개정의견
- 사회복지세법(가칭) 제정의견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영상산업진흥법(가칭)관련 제정의견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의견
-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의견
- 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 개정의견
- 중소기업사업조정법 개정의견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의견

◎産業·經濟 ..... 62

- OUR관련 입법의견
- 감사원법 개정의견
-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국영무역법률(가칭) 제정의견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의견
-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사회간접자본(SOC)확충을위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가칭) 제정의견
- 산업기술대학법(가칭) 제정의견
- 산업기술발전기반조성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상품권법시행령 개정의견
- 세법관련 개정의견
- 소비자보호법 개정의견
- 수출보험법 개정의견
- 외국환관리법 개정의견
- 유통단지개발촉진법(가칭) 제정의견
- 자금세탁방지법(가칭) 제정의견

○특허심판제도개선(안)관련 입법의견

◎農林·水産 ..... 70

- 농어촌종합대책관련 입법의견
- 농어촌특별세법안관련 입법의견
- 산림법 개정의견
- 양곡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견

◎建設 ..... 73

- 건축법관련 개정의견
- 건축법시행령 개정의견
-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의견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의견
- 주차장법 개정의견
- 주택건설시상린규제관련 입법의견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의견
- 토지(임야)거래허가제관련 입법의견
- 하수도법시행령 개정의견

◎科學技術·交通·遞信 ..... 77

- 도로교통법 개정의견
- 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의견
-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의견

◎環境·保健 ..... 78

- 공중구강보건법(가칭) 제정의견
-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국민건강증진법(가칭) 제정의견
- 수질관리일원화관련 입법의견
- 약사법시행령 개정의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입법의견
- 정신보건법(가칭) 제정의견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의견
- 학교보건법 개정의견
- 환경범죄 관련 입법의견
-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의견
- 환경정보법(가칭) 제정의견
- 환경정책완화 관련 입법의견

◎法院·法務 ..... 82

- 민사소송법 개정의견
- 변호사법 개정의견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의견
- 사법부개혁 관련 입법의견
- 형사소송법 개정의견

## 2. 최근입법의견요지

(1993.12.11. ~ 1994. 2.10)

### ◎憲政

#### ○국회법 개정의견

- 국회 정보위원회 구성문제에 있어서 국가기밀보호를 우선하여 ①정보위 소속 의원의 최소화, ②정보위 소속위원과 그의 보좌진에 대한 신원조사 명문화, ③ 기밀누설시 10년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함(민자당).

: 동아 94.1.15., 4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66면) · 제8호(64면) · 제9호(85~86면) · 제11호(66면) 참조

#### ○정부조직법 개정의견

- 대외관련업무가 20개부처 69개과에 걸쳐 산재해 있는데 전면 개방시대에 업무가 이렇게 수평·수직적으로 분산·중복되어서는 통상정책을 유기적으로 조정·관장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통상업무의 기능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일원화하도록 서둘러야 하므로 통상총괄부처의 설립으로 업무의 비능력·비효율을 제거하고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 능동·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세계일보 칼럼).

- 추진중인 정부의 경제부처 개편은 관료사회의 반발을 우려하여 과거처럼 부분적으로 개편할 것이 아니라 WTO(세계무역기구)체제 출범으로 경제전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함(세계일보 사설).

: 세계 93.12.21., 5면; 세계 94.1.6., 3면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여야는 무기명 기부증서제(쿠폰제) 대신 중앙선관위 발행 정액 영수증제를 도



입기로 최종합의하고, 그 금액은 5만원, 10만원, 50만원 등 정액으로 하며 이의 악용을 막기위해 영수증 일련번호 및 기부자 이름을 공개하거나 할인판매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을 넣기로 함. 이밖에 현재 선거가 있는 해에 한해 국고보조금의 두배를 지급하던 것을, 동시선거에 대비해 하나의 선거에만 법정 국고보조금을 전액지급하되 추가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당 국고보조금의 절반씩을 더 지급하는 식으로 바꾸기로 함(한겨레신문 해설).

- 「정치자금법」에서 합의된 정액영수증제 말고도 ①정치자금의 지정기탁제 폐지 여부, ②국고보조금 인상여부등이 현안으로 남아있음(세계일보 해설).

: 한겨레 94.1.29., 3면; 세계 94.1.29., 2면; 세계 94.1.30., 3면; 서울 94.1.4., 4면

-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4호(23면) · 제8호(66~67면) · 제11호(69~70면) · 제12호(69~70면) · 제13호(46~47면) 참조

#### ○지방자치법 개정의견

- 민선단체장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체장 징계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징계방법은 국회의원, 국무위원, 대법관 등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무장관이나 국무총리 등이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함. 또 현행 자치법상 단체장이 직무를 게을리했을 경우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장관이 직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 없어 이행명령제를 도입해야 함(내무부 『지방자치법 추가개정 제안사항검토서』).
-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비대한 데 비해 이를 견제할 장치가 미비하다고 판단된다면 지방의회에 불신임권을 주고 또 주민들의 소환제도를 명문화하는 등의 보완책을 강구할 것이며, 부단체장을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남겨 중앙정부가 계속 임면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안은 민선 자치단체장의 지휘아래 일사불란하게 자치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부단체장도 단체장의 지시 및 통제를 받게 해야 함(조선일보 해설).
- 정부가 민선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해임등 징계권을 갖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중앙집권을 계속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임(민주당).
- 민선단체장 징계제란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라는 지자체의 기본정신에 어긋나

현실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으며 지자체의 성공을 위해 주민의 몫, 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은 최대한 확보해 주어야 함(경향신문 사설).

- 민자당의원들은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법조항의 존치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면폐지를 주장. 논란끝에 내무부가 자치단체의 법령위반 사항만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범위를 축소했고 대신 법령위반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자치사무에 대해 내무부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타협함(동아일보 해설).

: 동아 93.12.15.,1면; 동아 94.1.14.,2면; 조선 93.12.15.,2면; 94.1.15.,3면; 경향 93.12.15.,2면; 경향 94.1.15.,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1호(70~71면) · 제12호(71면) 참조

### ○헌법 개정의견

- 현행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여 ①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지 않은 통일은 하지 않고, ②사회주의국가인 북한을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남한에 흡수통일하겠다는 것이며, ③통일추진과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행위조차 위헌이 될수 있음(개폐론자 : 김명기 명지대교수, 장명봉 국민대교수, 장기봉 전성균관대교수).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기본적 인권보장, 권력분립, 책임정치, 사법권 독립, 복수정당제 등으로 형식적이거나 북한이 내걸고 있는 평등, 사회적 기본권, 다수결원칙 등은 이에 부합하므로 남북한이 상호체제를 인정, 긍정적 측면을 절충해간다면 제4조는 흡수통일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멘의 합병식 통일도 포함하는 것임(존속론자 : 제성호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세계 94.1.12.,8면; 서울 94.1.4.,4면

### ◎統一·外交·國防

○6.25민간인전쟁피해자특별원호법(가칭) 제정의견

- 독일, 일본 등은 오래전부터 「6.25민간인전쟁피해자특별원호법」을 만들어 연금을 지불하고 있는 바 긴 세월을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자들을 위해서 이법의 제정을 건의함.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통일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통일이후 서로 다른 남북한 체제가 합치는 과정에서 발생할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부동산소유권분쟁과 민·형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예멘통일이후의 법령등을 참조, 법적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앞으로 남북간 주민들의 활발한 왕래가 예상됨에 따라 판문점 부근에 남북출입을 관리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형식의 '출입경관리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임(법무부).

: 경향 94.1.26., 1면

◎內務·地方行政

○경제행정조직개편관련 입법의견

- ①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통상기능의 부분적 조정으로는 총체적인 통상압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으므로 경제부처와 외무부에 분산되어 있는 통상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여 통상총괄부처를 설립해야 함. ②통상, 환경의 기능이 통합되고 행정규제가 대폭 완화되면 경제기획원의 조정기능을 축소하며, ③재무부도 금융·외환부문의 규제완화로 역할과 기능이 줄게 되므로 기구를 축소하고, ④건설부와 농림수산부의 기능은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게 타당하며, ⑤지방자치가 정착되면 경제관료에 대한 지방정부의 수요가 증가하므로 잉여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세계일보 해설).
- 과도한 행정비용이 드는 행정조직의 무분별한 시·군분할등은 국가경쟁력강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기초자치단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함(정순덕 민자당의원).

: 세계 94.1.6.,3면; 세계 94.1.13.,2면; 서울 94.1.5.,5면; 서울 94.1.13,2면

○서울시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지방행정의 전문성과 계속성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부시장을 3명 이상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시 내무국도 지방자치관련 법규들을 정비해 민선시장 이후의 인사·법령·권한 등을 재규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임(서울시).

: 한겨레 94.1.5.,2면

○지방세법 개정의견

-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세율은 그대로 둔 채 과표현실화라는 명분으로 토지 및 건물의 과표를 행정부가 임의로 인상, 조세부담을 높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편법임(동아일보 해설).
- 과표를 인상하면 당연히 세율을 낮추는 한편 세율적용을 위한 건물가액 단계도 과감히 현실화해야 함(최명근 서울시립대교수).

: 동아 94.1.12.,1면,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4호(28면)·제5호(49면) 참조

○행정정보공개법(가칭) 제정의견

- 정부는 행정공개를 통한 투명한 정부와 행정절차 확립을 통한 민주정부를 실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정보공개법(가칭)」과 「행정절차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함(김석준 이대교수).

: 서울 94.1.4.,4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41~42면)·제7호(60면)·제9호(90~91면)·제11호(78~79면) 참조

○행정조직및행정구역개편관련 입법의견

- 특별시와 직할시는 중앙통제식 행정구조의 상징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치개념에 동떨어진 중앙집권식구조는 바뀌어야 함(신상식 민자당 국회정치특위위원장).
- 행정조직개편은 새정부출범 초기에나 가능한 일이므로 개편의 필요성에는 어

느정도 공감하지만 정치·경제·사회적 모든 요소를 감안할 때 선거전에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불가능함(강삼재 민자당기조실장).

- 사정개혁 1년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개혁의 주역으로서보다는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만큼 이들을 개혁의 주체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대폭적인 정부조직개편과 행정구역 개편이 있어야 하며, 먼저 국제화·개방화에 걸맞는 정부조직을 갖추기 위해 통상·정보·산업·기술조직과 환경·복지부문을 강화하고 지나치게 비대했던 안보관련 기구를 축소시켜 '신중상주의 복지국가'의 정부조직으로 정비해야 함. 행정구역 개편도 과감하게 추진하여 정치개혁의 기반을 마련해야 함(김석기 이대교수).

- 광역행정구역중 서울분할(3~4개시), 경기남·북도, 강원동·서도 신설등과 기초 읍·면·동단위를 폐지, 시·도→시·군·구→읍·면·동의 현행 3단계 행정구조를 2단계로 축소시켜야 함(민자당정책위 보고).

: 서울 94.1.4., 2면; 서울 94.1.4., 4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73면) 참조

#### ○환경행정조직개편관련 입법의견

-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를 계기로 현재의 환경행정조직을 근본적으로 개편, 하천 유역별로 환경관리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현재 지역별로 환경행정을 담당하는 지방환경청을 '환경관리청'으로 개편해 배출업소 허가를 비롯, 지도 단속업무와 함께 수자원과 상수원을 관리토록 하고, 건설부가 갖고 있는 수자원 업무 및 정수장 관리기능과 보사부의 수도꼭지 관리업무 등을 환경관리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임(환경처).

: 동아 94.1.14., 1면; 한국 94.1.14., 1면; 세계 94.1.14., 1면; 서울 94.1.14., 1면

#### ◎社會·文化·教育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국민생활편의를 위한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가정의례에 관한 법령중 일부 유

명무실한 금지조항을 완화하고,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굴건제복, 화환·화분·청첩장발송등 7개 허례허식행위중 현실적으로 금지가 불가능한 것은 허용범위를 확대키로 하며,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예외적으로 인정된 '대중음식점에서의 식사제공 허용' 규정에 주류접대도 가능토록 함(보사부).

: 세계 94.1.13., 2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91~92면)·제9호(91~92면)·제13호(58~59면) 참조

### ○교육공무원법 개정의견

- 우수교원확보를 위하여 ①신규채용된 교사들에게 실무를 익히도록 하여 교사로서의 자질과 교직 적합성을 최종평가하는 수습교사제, ②중등교원양성의 새로운 모형으로서 정규대학의 졸업자중 교원희망자에 1년동안의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2급정교사 자격증을 주는 4+1제를 도입해야 함(최희선 인천교대교수, 『우수교원확보를 위한 교원정책 개혁방안』 토론회).

: 세계 93.12.28., 8면

### ○교육법 개정의견

- 내년중 마련할 고등교육시장 개방전략에 맞춰 관련 법규가 제정·개정될 95년 상반기까지 적용될 대학교육협력사업 지침을 다음과 같이 확정함. ①외국 대학의 설립 및 분교 설치(상업적 주재의 자유화), ②외국 대학에 의한 통신교육(국경간 공급의 자유화) 등 2개의 개방 유형은 절대 허용치 않고 외국인 교수의 국내대학 초빙(인력이동의 자유화) 등의 개방유형은 인정하나 과학기술, 외국어분야중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교수의 자격기준내에서만 최소 범위로 초청하며, 한국학생의 외국 유학을 위한 학생모집 및 알선등은 단순한 상업적 행위로 간주, 허용하지만 외국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이 한국내에서 자국민을 위한 교육활동을 할 경우 외국인단체등록 절차를 통해야만 가능함(교육부).

- 실적없이 근무연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승진되는 현행 교수인사제도가 달라져야 하며 임용 승진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고 보다 엄격한 기준이 확립돼야 함. 교수의 업적평가관리도 철저한 양식과 기준에 근거해야

함(서울대 자연과학대백서).

- 안정적인 재원과 운용권 확보를 위해 교육재원의 법정화와 포괄적인 예산배분이 이뤄져야 함. 즉 경제기획원에서는 교육예산규모 내지 초·중·고등교육등 영역별 예산총액만을 배정하고 구체적인 편성과 집행은 교육부 조정하에 교육위원회가 담당함. 교육자치제는 시·군·구단위까지 확대 실시해야 하며 현재 농어촌지역은 학생수와 학교수가 적어 비효율적이므로 현행 통합교육청처럼 몇개 시·군·구를 특별 지방자치단체로 묶어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사립학교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독자적인 학생선발권을 부활해야 함. 이와함께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평준화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교육의 정상화를 모색해야 함(김신복 서울대교수).

： 세계 93.12.27., 22면; 세계 94.1.9., 21면; 한겨레 94.1.10.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7호(61면)·제8호(76면)·제11호(81면) 참조

#### ○교육법시행령 개정의견

- 고등학교 입학방법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감은 현행 선발고사로 신입생을 선발해도 되고 이와 달리 중학 내신성적만으로, 또는 내신성적과 선발고사를 병합한 방법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되는 등 고입전형방법이 자율화되며, 교육부장관이 정하거나 승인을 하도록 되어있던 전형시기와 선발고사 과목의 결정권한 등도 교육감에게 위임되는 「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교육부).
- 내신·수능·실기의 배점결정을 대학에 맡기고, 선발과정을 1·2차로 분리해 1차에서 내신 또는 수능성적으로 유자격자를 가린 뒤 2차에선 실기점수 순위만으로 최종합격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전국음악대학장협의회).

： 동아 94.1.22., 29면; 조선 94.2.1., 30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3호(60면) 참조

####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관련 입법의견

- 여성의 권리향상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개선에는 ①주부들의 취업확대, ②대졸여성의 취업확대, ③여성보호를 위한 유급 생리휴가 폐지문제, ④부부증여세, ⑤노인을 모시는 가족·맞벌이 가족·노인 단독가구의 특별배려 등의 문

제가 고려되어야 함.

- 현재 모성보호비용을 기업에 전담시켜 사업주 입장에서 볼 때 모성보호규정이 비용부담을 늘리는 요인이 되어 여성채용 기피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화를 이뤄야 하며, 그 방안으로 ①생리휴가의 경우 유급에 따른 임금지급은 기업에서 부담하되 휴가사용을 가능한 권장하고, ②산전·산후휴가와 육아휴직 비용은 고용보험으로 충당하며, ③현재 모성보호비용 부담 주체가 다소 모호하게 돼 있는 유급규정을 명료화해 비용의 일부를 근로자가 부담케 하며, ④산전·산후휴가의 경우 국제노동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12주로 확대하고, ⑤현재 무급으로 돼 있는 육아휴직의 유급화, ⑥자녀간병휴가와 탁아시설 확충 등 모성보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그 혜택을 남녀 모두에게 돌아가게 해야 함. 특히 기업에만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모성보호비용의 분산과 함께 모성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수립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김유배 성균관대교수, 대한YWCA연합회 주최 『여성근로자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방안』 토론회).
- 동일한 조건의 남녀가 고용·임금·승진면에서 계속차별받고, 법에 보장된 기존의 보호장치들도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작스런 생리휴가의 폐지는 여성근로여건의 악화만을 초래하므로 생리휴가의 무급제 전환은 계획안에 포함된 고용평등과 여성보호 관련 여타조항들이 정착된 뒤에야 사무직·서비스업·제조업등의 순으로 차등적용돼야 함(김령자 한국노총여성국장).
- 현재 유급 생리휴가제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중 일부에 불과하며 현재 생산직 여성들의 저임금을 보장하는 의미가 큰 것임(왕인순 사무국장,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 모집·채용·승진·임금등의 차별이 존속하고 있고 법에 규정된 조항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생리휴가만을 폐지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성급한 조치로 각종 여성차별관행이 개선된 이후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노동조건이 나은 직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노총).
- 생리휴가가 기업주로 하여금 여성고용을 기피하므로 여성 특별보호조항이 오히려 여성취업의 방해물이 될 수 있음(정무제2장관실).
- 단순히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근무 효율면에서 생리휴가의 무급제 실



시방침은 환영하며, 출산휴가는 지금의 8주로 부족하므로 늘려도 좋지만, 산전휴가를 늘리기보다는 외국처럼 산후휴가를 늘리는 쪽으로 해야 할 것임(김윤배 이사, 코오롱그룹 인사팀장).

- 생산현장에서 여성인력난을 겪고있는 점을 감안, 생리휴가의 무급전환은 환영함(이해전 이사, 기협중앙회).
- 실질적인 모성보호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비용부담의 사회화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모성보호법규를 좀더 강화해야 함(김엘림 책임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 바람직한 여성노동정책 추진 방향으로 「근로자파견법」 제정 철회, 임시직 등 비정규직 고용확대 규제책 수립, 여성고용정책의 방향을 시간제 취업 확대가 아닌 정규직 취업확대로 전환, 유급 생리휴가 존속,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 조항을 국제적 추세에 따라 양성평등 조항으로 개정, 산전산후휴가 90일 이상 확대와 임신중 유급검진휴가·유급유산휴가 신설,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및 월차휴가 폐지 등의 근로기준법 개악 금지 등을 제시(범여성계공동위원회).

: 서울 94.1.16.,14면; 국민 93.12.14.,11면; 한국 94.1.10.,11면; 조선 94.1.6.,5면; 경향 93.12.14.,9면

#### ○노동관계법 개정의견

- 임금교섭은 정부당국의 지배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교섭 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정부가 공정하게 조정하면 되는 것으로 노동법 개정작업도 노사 당사자와 각계의 주장과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원칙에 기초하여 추진한다면 그 자체가 큰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며 임금교섭의 자율적 관행 정착을 포함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라도 노동법의 빠른 개정이 요망됨(한겨레신문 사설).
- 국제노동기구에서 제시하는 노동자의 권익기준을 받아들이고, 노동자들의 구속·수배를 양산하는 제3자개입금지조항,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하는 복수노동금지조항 등이 없어지고 「근로자파견법」이나 「근로기준법」 개악 등도 없어야 할 것임(최은석, 전국조선업종노동조합의회 준비위원회장).
- 임금교섭은 정부당국의 지배나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교섭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정부가 공정하게 조정하도록 하는 자율적 관행을 포

합해야 함(한겨레신문 사설).

- 현재의 법령제도는 근로자가 거의 무권리상태에 있었고,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임을 감안하여 개정되어야함(배무기 서울대교수).
- 노동관계법 개정은 을 임금교섭후 관계부처·당정단 협의를 거치고 노사의 의견수렴후 형성된 사회적 공감대 바탕위에서 내용 및 시기를 결정할 것임(남재희 노동부장관).

: 한겨레 94.1.10.,14면; 한겨레 94.1.11.,3면; 세계 94.1.17.,8면; 국민 94.1.18.,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45면)·제7호(61면)·제8호(78면)·제9호(94면)·제12호(79면) 참조

#### ○방송관계법 개정의견

- 95년중에 종합유선방송의 도입과 함께 위성방송등 뉴미디어들이 단계적으로 실용화될 예정이어서 지상파방송(기존의 TV 라디오방송)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방송관련법과 제도들은 사실상 전면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①현행 「방송법」과 CATV를 관리하는 「종합유선방송법」, 입법을 추진중에 있는 「위성방송법」, 지상파방송의 허가과 관련된 「전파관리법」 등의 법들은 위계가 없고 기존 방송법이 뉴미디어를 규제할 권한도 없음. ②무선국의 허가는 체신부, 방송정책은 공보처, 방송프로그램의 심의와 감독은 방송위원회 등으로 업무가 분산돼 방송정책에 일관성 유지가 어려우므로 방송관련기관을 단일화해야 함. ③언론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언론사복합경영금지조항은 전면 고려돼야 하며 자본과 기술을 필요로 하고 대외경쟁력이 요구되는 뉴미디어사업에 신문사도 참여할 수 있게 방안을 모색해야 함(김원용 성균관대교수).
- 관련법이 이해집단의 특성이나 사회적인 분위기 등에 따라 목적이나 내용이 달라지므로 공보처와 체신부 등 뉴미디어관련 부처별 입법화 추진은 전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CATV, 위성방송, 지상방송 등에 대기업과 일간신문, 통신사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된 것에 대해 소유제한을 완화해야 함(전석호 중앙대교수).

: 조선 94.1.14., 23면

○사회복지세법(가칭) 제정의견

- 무의탁 노인이 몇 십만명이나 되는 현실의 개선을 위하여 1,000만 근로자 한 사람 당 매월 1,000원씩 사회복지세를 거두고 각종 고급영업장의 봉사료를 5%정도 더 거두며 사치업종의 과세강화로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노인복지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발암성 물질의 제조·취급 등 직업성 암 발병 개연성이 높은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평생 건강진단과 업무상 재해판정 등을 위해 발급하는 건강관리수첩을 석면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에게도 발급해 주기로 함(노동부).
- 현재 직업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재활은 내과, 신경과, 예방의학 등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내과 신경과 등은 근로자의 임상증상 위주로 치료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과 관련성 파악이 부족하고 예방의학은 임상진료 능력에 한계가 있어 현재의 전문의 제도로 직업병을 정확히 진단하기 곤란한 실정으므로 '산업의학전문의제'를 도입해야 함(조수현 서울대학교수).
- 매년 실시하는 건강진단 결과에서도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직업병 판정에 긴 시간이 소요돼 근로자 전문인력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다 신종 직업병 발생에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현재의 '산업보건제도'는 '산업의학전문의제'로 시급히 개선돼야 함(이세훈 카톨릭대학교수).
- 별도의 산업의학전문의 과정은 불필요하며 현행 23개 과목의 개별적 전문의가 유기적으로 일을 하되, 종합관리자로서 산업장종사전문의는 산업보건대학원 등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한 인력들을 배치하는게 타당할 것임(최삼섭 이화여대학교수).
- 우리의 의료시스템이 단순화되어 있어 다양화 추세의 직업병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이 어렵고 임상증세위주로 치료하기 때문에 직업병과의 관련성 파악조차 힘든 실정으므로 산업현장의 질병관리를 주업무로 하는 '산업의학전문의제' 신설이 시급함(윤임중 카톨릭대학교수, 산업의학학회장).

- '산업의학전문의제도'가 도입되면 ①기존전문의제도와 상치, ②병원내 과목의 기능분담과 협조에서 문제점 야기, ③전공의 교육프로그램이나 전문의 인력수급, ④양질의 의료제공 측면에서 문제가 적잖을 것이므로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요망됨(김선호 의학협회 상근부회장).
  - 산업의학전문의 신설에는 역학과 법규부문이 강화되어 전문성을 확고히 갖춘 역학이 마련되어야 하며 「전문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야 함(조병윤 보사부 의정국장).
  - 직업성 질환은 인간·병원체·환경이라는 일반적인 질병 발생요인 이외 다수의 인위적인 유해인자가 존재하는 작업장에서도 발생하므로 예방을 위해 근로자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그리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춘 '산업의학제도'가 필요함(한창석 노총 산업안전보건국장).
- : 한겨레 93.12.15.,18면

#### ○영상산업진흥법(가칭)관련 제정의견

- 첨단 문화상품과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상품개발에 역점을 두고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만화영화와 비디오게임·디자인을 새주력업종으로 육성하며 21세기 문화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영상산업진흥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함(문화체육부).
- 문화사업은 바로 선진국의 문화침투가 예상됨과 동시에 첨단영상매체가 계속 개발되고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분야로 이를 총체적으로 발전시키고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발전역량강화지원을 위해 「영상진흥법(가칭)」을 추진함(김진무 문화체육부 문화정책국장).

: 세계 94.1.12.,17면; 서울 94.1.26.,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0호(82면) 참조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의견

- 94년 3월부터 철근·콘크리트로 건설된 5층이상의 아파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되고 기타 정부공사의 하자담

보 책임기간도 현행보다 2배로 연장되며, 지방중소기업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늘려주기위해 공동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1인 이상이 해당지역(직할시 및 도)소재 건설업체가 되도록 의무화하여 오는 9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함.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방법으로만 계약을 체결했으나 앞으로는 단계적 수의계약, 중소기업만의 제한경쟁, 지명경쟁입찰방법 중 발주관서가 선택, 집행할 수 있도록 했고 이 밖에 계약금액이 50억원이상인 토목·건축공사와 기타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등은 공사감독을 공무원 대신 전문기관(감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재무부).

: 조선 93.12.24.,2면; 세계 93.12.24.,6면; 서울 93.12.24.,9면

####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의견

-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1개의 운영국을 허가하도록 한 현행제도가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관련업계와 케이블TV 운영국 허가심사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한 방송국 운영자가 인접 방송국을 2,3개 정도 겸영할 수 있도록 바꿀 방침임(오인환 공보처장관).

: 동아 94.1.14.,2면

#### ○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 개정의견

- 종합유선방송(CATV)의 외국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30%로 제한한 현행 규정을 고쳐 과학기술 교양 스포츠채널에 한해서는 50%로 확대하고 법규상 이원화돼 있어 혼란을 빚고 있는 분배망(프로그램 공급업-CATV방송국)과, 전송망(CATV방송국-가입자)이라는 두가지 용어를 '전송망'으로 일원화, '프로그램 공급자로부터 종합유선방송 및 수신자에 이르는 전송선로 시설'이라고 고칠 예정. 그러나 영화, 교육 등 나머지 채널은 현행대로 30% 제한선을 고수할 방침임(공보처).

: 세계 94.2.2.,21면

#### ○중소기업사업조정법 개정의견

-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는 대기업의 참여를 막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개방화 추세에 맞춰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없앨 계획임(상공자원부).

: 경향 93.12.28., 7면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사회교육 시설이 부족한 실정에서 문화센터는 주부·직장인등에게 평생교육을 시키는 곳으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95년 교육시장 개방을 앞두고 선진국들의 시장잡식을 막기위해서라도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함(강남교육청).
- 유아를 과외금지대상에 넣지 않는다면 예·체능외에 영어, 속셈, 주산등 각종 과외교습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게 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성장해야 할 시기에 부적절한 교육으로 오히려 부담과 스트레스만을 가중시키고 기초능력 함양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유아를 과외금지대상에 포함시켜야 함(한국유아교육학회).
- 교습수요 및 시설규모에 관한 기준, 강사자격 등을 법률로 규정해 학원운영자들간의 지나친 경쟁을 막는 한편 외국인의 무분별한 학원설립을 억제하기로 함(교육부).
- 유아에게 과외가 허용되면 “유아는 놀면서 배운다”는 교육원리에도 어긋나고 어린이의 전인적 성장발달에도 지장을 초래하며 막대한 유아교육비가 드므로 취학적 유아들은 모두 평등하게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화해야 함(인간교육실천 학부모연대).

: 한국 93.12.28., 29면; 국민 93.12.11., 11면; 경향 94.1.28., 14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4호(29~30면)·제7호(63면)·제10호(83~84면)·제11호(86면)·제12호(82~84면)·제13호(67~68면) 참조

### ◎産業·經濟

#### ○UR관련 입법의견

- UR관련법의 수정보완외에 국내시장에서 외국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속

하기 위한 「반덤핑법」, 「식품위생법」, 「검역법」 등은 새로 만들거나 기존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하며 「세법」, 「양곡관리법」, 「예산회계법」, 「은행법」, 「증권업법」, 「보험업법」, 「근로기준법」, 「대외무역법」, 「공정거래관리법」, 「대외무역법」, 「외국인토지법」, 「중소기업진흥법」, 「지방세법」 등은 개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GATT측은 UR의정서 최종 발효시기를 95년 7월 1일로 계획하고 있어 국내비준 절차도 내년 6월말까지는 완료되어야 하므로 국내법의 정비작업도 이러한 일정을 감안, 올해말 정기국회가 끝날때까지는 완료되는 것이 바람직함.

: 동아 94.1.10., 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3호(72~73면) 참조

#### ○감사원법 개정의견

-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하는 차원에서 감사원이 공무원의 예금계좌를 영장없이 조사할 수 있어야 공직사회의 비리를 막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예금계좌 추적권을 「감사원법」 개정안에 담은 방안을 모색함. 안기부의 경우 안기부장의 책임하에 자체 회계검사를 하도록 돼있는 현행 안기부법으로 볼 때 안기부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원의 감사는 불가능하지만 현행 법의 테두리내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 안기부예산을 부분적으로나마 감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이시윤 감사원장).
- 비리혐의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부받을 수 있는데도 굳이 영장없는 계좌추적을 고집하는 것은 자칫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흐를 수 있으므로 지나친 의욕을 앞세울 경우 법치주의와 경제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하고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이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조선일보 사설).
- 예금계좌의 조사대상을 비리혐의가 현저한 공직자와 그 직계가족으로 한정하고 예금계좌의 조사를 위해서는 감사위원회가 대상을 의결하고 감사원장이 행정영장 형식의 업무협조요구서를 은행감독원등에 보내도록 함. 감사원장·사무총장·사무처등의 단선조직 위주로 이루어지던 감사원의 운영방식을 헌법정신에 따라 원장과 6인 감사위원의 합의제로 운영한다는 규정을 담고 93년

8월 제출된 개정안의 검찰, 경찰, 국세청등에 대한 협조요구권의 강화, 5급이상 공무원 임면등 감사위원회의 의결, 감사원장 정년시 잔여임기 보장등의 조항은 삭제하기로 함(감사원).

: 조선 93.12.30.,2면; 조선 93.12.31.,3면; 한국 93.12.31.,2면; 서울 94.

1.9.,3면

####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대그룹의 민자유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개정하고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재벌그룹 계열기업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순자산의 40%) 예외인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30년 정도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검토함(공정거래위원회).

: 국민 94.1.3.,6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47~48면) 참조

#### ○국영무역법률(가칭) 제정의견

- 남북한 거래를 내부거래로 규정, 국내보조감축 기준연도를 현행 86~88년 기준에서 89~91년 기준으로 변경, 농어촌특별세에 수입농축산물 판매이익금, 마사회 수익금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국영무역법률(가칭)」을 국회에 제출할 것임(민주당 UR대책위).

: 국민 94.2.1.,2면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 제정의견

- 실명제 긴급명령의 비밀보장 조항(제4조)을 구체화한 것으로 수사기관 등이 불특정다수인의 정보요구를 못하게 하는 등 실명제 정착을 위해 예금자의 비밀보장권을 대폭 강화하고 증거인멸 우려등 사유가 있을때는 정보제공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는 기간을 3개월까지, 생명이나 신체적 안전에 위해가 계속되는 경우는 무기한으로 늘릴 수 있게 했는데 정보제공 동의서 효력기간을 6개월로 제한했으며 동의한 후 7일이내에 늘릴 수 있게함. 이번 시행령(안)은 예금자의 비밀보장권을 상당히 강화한 것으로 ①수사기관 등에 의해 사전동의제가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의서가 한번 만들어져도 6개월이 지나면 효력



이 없어지도록 했고, ②금융기관에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게 하여 '누구의 은행거래내용 전부' 하는 식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일괄적 정보요구를 불가능하게 하고 ③금융기관이 정보제공 뒤 10일 안에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줄 의무를 지킨 하되 정보제공 사실을 알림으로써 당사자가 달아나버려 증거가 없어지거나 질문·조사 등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안에 통보해주고, ④정보를 요구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적 안전에 위협이 있으면 아예 통보를 무기한 유예할 수 있도록 함. 이밖에 명의인의 동의에 의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의서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정보제공의 요구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의서에 기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동의서에는 거래 금융기관이나 읍·면·동·등기소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토록 의무화함(재무부).

: 한겨레 93.12.31., 7면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의견

- 행정규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전면 개정, 1천5백여개 경제법령상 인·허가등 각종 행위제한 관련조항을 사문화하고 대상법령으로 「소방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외국환관리법」등 토지이용 및 금융에 관련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등)로서 이 가운데 인·허가 등록신고 및 행위제한에 관한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킬 예정임. 정부는 또 새로운 규제가 생기지 않게 새 법을 만들 때는 반드시 규제완화 심의위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위가 기존 규제의 존치여부도 심의, 해당부처에 완화를 촉구하는 조항도 특별법 개정 때 넣기로 함(상공자원부).
- 기업활동규제완화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 외에도 각부처 소관 개별법에 규정된 인·허가나 등록·신고절차 등이 개별법 개정을 통해 추진돼왔으나 법조문 한두조항을 갖고 개별법을 개정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개별법 개정에 시간이 오래 걸려 내년에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을 고쳐 문제조항을 일거에 사문화 시키기로 함(이건우 상공자원부 중소기업국장).

: 한국 93.12.25., 1면; 한겨레 93.12.28., 3면; 국민 93.12.28., 7면; 서울 93.12.25., 2면; 서울 94.1.9.,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90~91면) 참조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노사화합을 위해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증시에서 자사주식을 매입,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경감해 주기로 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고 「증권거래법시행령」에 기업이 자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기로 함. 재무부는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게 되면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근로자가 별도로 내야 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기업이 자사주식으로 지급한 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세금으로 징수해 국가에 납부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손비로 인정, 기업 및 근로자의 추가부담을 덜기로 함(홍재형 재무부장관).

: 세계 94.2.3., 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92면) 참조

○사회간접자본(SOC)확충을위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가칭) 제정의견

- 사회간접자본(SOC)중 공공성이 강한 도로, 철도, 지하철, 항만, 공항, 다목적댐, 상하수도시설, 하천부속물 등을 기본시설로 분류하고 이들 시설은 완공후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며 사업시행자는 사용권을 갖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기본시설의 사용권을 갖는 기간은 별도로 법에 규정하지 않고 각각의 사업에 따라 민자유치사업심의회(위원장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에서 결정하게 됨. 투자회수가 늦어질 경우 사용권 연장도 가능함. SOC이용 수수료를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나 기본시설의 경우 공공성이 강한데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커 정부가 간여할 수 있는 장치(변경명령권)를 법안에 마련했으며 이 경우 투자회수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사업시행지역 부근에 주택건설·택지조성·도시재개발·공단개발·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화물터미널 사업등의 부대사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경제기획원).

: 동아 94.1.15.11면

○산업기술대학법(가칭) 제정의견

- 기존 기술개발자금 지원제도를 UR규범과 일치시키면서 그 지원규모를 확충하고 우수산업인력 양성방안으로 「산업기술대학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고 공교육 과정의 개편 및 대기업의 사내훈련을 확충키로 함(상공부).

: 세계 93.12.18., 7면

#### ○산업기술발전기반조성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산업지원정책의 적극개발을 위해 기술정보 및 연구설비확충, 국제협력추진 고급기술인력 양성 등 기술의 하부구조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산업기술발전기반조성에관한법률(가칭)」의 제정을 추진할 방침임(상공부).

: 세계 93.12.18., 7면

#### ○상품권법시행령 개정의견

- ①상품권법의 개정에 따라 이의 구체적 시행령을 마련 94년1월 하순부터 시행할 계획임. 상품권의 1장당 발행액 최고한도를 양복, 의류등 물품상품권은 50만원, 렌트카이용권등 용역상품권은 30만원, 아무런 물건이나 살 수 있는 금액상품권은 10만원으로함. ②금액상품권의 경우 표시금액의 80%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금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발행후 5년(상법상 상거래채권 소멸시효) 이내일 경우 70%만을 상환받을 수 있게함. ③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경우 최소한 1년이상으로 정하도록 제한하되 가공·건조되지 않은 농수축산물로서 장기보관시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개월이상으로 정하도록 허용함. ④이미 시행중인 도서상품권처럼 상품권발행자와 상품공급자가 다른 제3자형 상품권전문발행법인의 인가요건을 새로 마련, 자본금이나 출자금 규모를 10억원이상으로 규정함(재무부).
- 일부에서는 유가증권으로 화폐처럼 유통될 상품권이 백화점들의 줄속발행으로 발행 초기에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지않을까 우려되고 있고 외국에서 인쇄된 상품권을 수입할 경우 통관관리 규정상 유가증권에 해당, 한국은행총재의 수입허가를 받도록 돼있어 제도보완이 필요함. 자체 발행능력이 부족한 중소형 백화점들은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 상품권발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금정

산등에 어려움이 있음(경향신문 경제뉴스).

: 한국 93.12.21., 8면; 국민 93.12.20., 7면; 한겨레 93.12.21., 7면; 경향93.12.21., 7면; 경향 93.12.13., 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84면) 참조

#### ○세법관련 개정의견

- 소규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새로이 아파트에 입주한 후 장기간 그 주택이 팔리지 않아서 투기목적이 아닌데도 과중한 양도세를 물게 되는 것은 불합리함.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소비자보호법 개정의견

- 구매상품에 대한 피해보상은 교환 및 수리가 대부분이고 환불받을 수 있는 경우는 방문과 할인판매시 계약철회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구제등 지극히 제한적이므로 소비자들이 구매상품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는 현금환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개정키로 하고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실시키로 함(행정쇄신위원회).

: 국민 94.1.7., 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60~61면) · 제4호(32~33면) 참조

#### ○수출보험법 개정의견

- 급변하는 국내외 무역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장개척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과 현지법인 재판매계약, 가공무역, 연계무역 등 특수국제거래의 위험을 덜어줄 각종 신종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현행 수출신용보증제를 중소기업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며 보증한도도 90%에서 1백%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함. 중소기업의 수출보험료 할인률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이고 사고확인이 끝나면 보험금을 곧바로 주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단축하고 그동안 보험대상에서 제외된 해외공장생산품의 제3국 수출, 가공무역, 구상무역, 물물교환등 특수한 연계무역에 대해서도 보험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함(김태준 수

출보협공사사장).

: 조선 94.2.3.,11면; 경향 94.2.3.,7면; 서울 94.2.3.,8면

### ○외국환관리법 개정의견

- 외국자본이 들어와 인플레가 발생하는 것은 「외국환관리법」으로 인한 본원통화의 증가 탓이므로 시대착오적인 「외국환관리법」의 철폐가 전개되어야 함(박태서 삼성종합화학사장).
- 「외국환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해 재무부 관계자는 현행 「외국환관리법」의 형사처벌조항은 개방시대에 맞지 않는 것으로 기업인들을 대거 전과자로 만드는 폐해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외화도피 혐의가 뚜렷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대신 벌과금을 물리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음(재무부).
- 개발초기의 여건에 맞춰 만들어졌던 「외국환관리법」은 기업활동의 글로벌화를 저해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불법적인 외화의 해외유출을 철저히 봉쇄하는 세정당국의 기업세무관리강화조치가 선행되어야 함. 해외에서의 방만한 외화사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현재 미국, 일본, 영국 3개국에만 파견되고 있는 세무관제도를 확대실시해야함. 외화규제가 철폐된다 하더라도 대외지불능력이나 신임도 등 국력을 나타내는 외환보유고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은 별도로 마련해야 함(서울신문 사설).
- 해외투자 인허가기관을 한국은행으로 일원화, 한국은행의 해외투자 허가한도 금액을 현 5백만달러에서 1천만달러로 확대할 것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①해외차입 한도철폐, ②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범위 확대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계열화를 통한 협력강화가 필요하므로 대기업의 지분참여 범위를 현재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함(대한상공회의소).

: 서울 94.1.5.,3면; 한겨레 93.12.19.,2면; 동아 94.1.6.,11면

### ○유통단지개발촉진법(가칭) 제정의견

- 가격과 교통면에서 적절한 미개발지역을 유통단지로 지정고시하면 이 지역에 물류시설을 설립하는 사업자는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등 약 30개 관련 법상의 용도변경등 인허가 절차를 모두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함. 정부는 또

유통단지조성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입법예고된 「민자유치촉진법」에 의거해 해당지역의 토지수용권, 국공유시설 무상사용권 및 금융이용상의 혜택도 줄 방침임(경제기획원).

: 국민 94.1.22.,6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3호(72~73면) 참조

#### ○자금세탁방지법(가칭) 제정의견

- 자본거래의 자유화 폭이 넓어지며 불법자금의 유출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마약자금 등 불법자금의 국내외거래를 막고자 함(이강연 관세청 평가협력국장).

: 서울, 94.1.19.,18면

#### ○특허심판제도개선(안)관련 입법의견

- 어려운 여건의 우리 산업계가 지금 각계에서 현행 특허심판제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개선방안이 제기되고 있어 매우 불안한 실정임. 특허심판의 특징은 기술적 사실관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기술의 전문성이 중시되고 판단기준의 일관성유지가 필요함. 현행 특허심판제도를 유지하면서 고등법원에서 이를 재차 심리하는 것은 재판의 신속성의 저하와 비용부담이 우려 됨. 근본적으로 선진국들처럼 기술전문가가 재판을 주도하는 전문특허법원이 바람직하나 우리의 경우에는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현행심판제도를 유지하되 심판기능을 대폭강화해 줄것을 요망함.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農林·水産

##### ○농어촌종합대책관련 입법의견

- ①농지소유상한제 폐지등 농지제도를 개혁하는 한편 농지금고를 설치, 팔려고 내놓은 농지를 흡수할 방침이고, ②탈농지원보상, 휴경 및 작목전환보상등을 통한 농민의 소득손실부분을 직접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③농어민 연금

및 경영이양연금제의 조기도입과 농작물재해지원기준 상향조정 및 농작물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④농어촌부흥세를 신설하고 수입농산물의 판매수익금을 기금화해 농어촌대책 추진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임(박광희 농림수산부 1차관보).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류(밀감 유자등)는 그동안 과수원에만 심을 수 있었으며, 산지에 심으려면 개간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허가 없이 산지에도 심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의결, 올 상반기중 「농지보전및이용법」과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을 개정키로함(행정쇄신위원회).

: 서울 93.12.28., 2면; 조선 94.1.8., 2면

#### ○농어촌특별세법안관련 입법 의견

-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에 의한 농어민 피해보상을 위해 「농어촌발전세(가칭)」를 신설하고 농산물 수입이익과 수입관세를 농가 및 농어촌에 환원한다는 방침을 정함(농림수산부).
- UR의 충격이 가장 커질 분야가 바로 경쟁력 낮은 농업부문이므로 이 분야의 획기적인 구조조정과 생산성 혁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농업개혁과 농촌발전구상 이전에 특별세 부과부터 먼저 서두르는 것은 일의 순서가 맞지 않음(조선일보 사설).
- 매년 1조5천억원씩 신설·부과되는 ‘농어촌발전세(가칭)’중 1조원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납세대상자들이 감면받는 세금에서 일정액을 떼어내 조성하고 나머지 5천억원은 부가세(surtax)형식으로 교육세부가의 부담이 없는 소득세와 법인세등의 세목에 덧붙여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함(조세연구원).
-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의 도입은 경제운영 전체와의 적합성, 국민적 합의 도출 노력, 세금의 분명한 용도, 과세대상의 합리성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와 법안을 심의할 국회는 목적세 아닌 일반세원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인지 재고해야함. 담배·주세등 기존세목의 활동과 조세감면의 축소, 세정강화를 통한 음성·탈루세원의 발굴 등으로 세원확보를 할 수 있음. 쓸곳도 뚜렷하게 마련해놓지 않은채 거두기 쉽다고 해서 목적세를 도입한다면 ‘양출제입’의 재정운용원칙에도 어긋남(경향신문 사설).
- 조세감면대상자에 대한 20%과세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설비투자에 대한

세감면 축소로 국제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보고 산업정책상 필요한 감면대상에는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장개방 수혜자들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중이며, 세금우대저축에 대한 2% 과세방침도 가계저축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근로자장기저축, 5년이상 개인연금·주택마련 저축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높이는등 고소득층에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임(민자당).

- 농정에 대한 청사진이 먼저 제시되고 재원조달방법이 나중에 마련되는 것이 일의 순서에 맞고 목적세를 만드는 것보다 일반세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함(김동건 서울대교수).
  - 1조5천억원이라는 재원의 산출근거가 모호하며 투자우선순위등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언급도 필요함. 농어촌세의 시한은 최소한 20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교육세가 부과되면서 일반예산에서의 지원이 감소된 예가 있는데 이와 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됨(김용택 농촌경제연구원책임연구원).
  - 경지정리, 중·대도시 농산물 유통도매시장을 만들고 산지유통시장을 발전시키는데, 경영이양, 환경, 영세농 생활안정보조, 교육시설 확충, 의료보호에도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요재원수준이 현재 논의되는 1조 5천억원이상 되어야 하며 재원마련 방안의 하나로 농어촌발전을 위한 복권발행도 고려해 봄직함(서원호 농협중앙회 조사부장).
  - 농촌문제는 개발정책의 문제로 경제개발로 이익을 본 계층이 재산세, 종토세, 상속세 등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재원이 추렴되어야 함(심상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농업혁신법(가칭)」등을 제정해 구체적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좋은 정책대안임(이진순 숭실대교수).
  - 재원조달 방법중 소득세에 가산하는 방법은 현재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이보다는 음성·탈루세원을 찾아내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해야 함(정병수 문화방송해설위원)
- : 한국 93.12.15.,1면; 한국 94.1.11.,2면; 경향 94.1.22.,3면; 조선 94.1.24.,2면

### ○산림법 개정의견

- UR 대체작물로 꼽히는 유자와 단감을 비롯,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과수목을



일반조림과 같이 개간허가 없이도 산지에 심을 수 있도록 함(행정쇄신위원회).

- 경사도 기준으로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된 산지이용 체계를 보전임지는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로, 준보전임지는 산업임지로 개편키로 하고 다양한 농외소득 개발을 위해 산지이용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함.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대상을 현행 24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버섯 재배시설·농기계 창고·농림축수산물의 가공시설 및 공판장·마을 공동회관·복지회관·농업용 공정식온실 등 6개가 추가되고 농지 또는 초지 조성을 위한 산지 전용 면적도 현행 최대 5ha 미만에서 20ha 미만으로 늘렸으며 임야 매매증명 발급대상 면적을 2천 $m^2$  이상에서 1만 $m^2$  이상으로 높이고 허가제인 매매증명 발급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함(산림청).

: 동아 94.1.8.,2면; 경향 94.1.8.,2면; 서울 94.1.13.,8면

#### ○양곡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견

- 누구든지 각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양곡매매업을 할 수 있게 하며 농민들도 양곡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들에게 쌀을 팔 수 있고, 소형 슈퍼마켓이나 잡화점등에서는 10kg, 20kg 단위로 규격포장된 쌀을 라면, 청량음료등 다른 식품류와 같이 매매신고를 하지 않고 팔 수 있게 함. 규격포장된 쌀에 대해서는 공산품과 같이 쌀의 생산연도, 중량, 생산지등을 구체적으로 표기, 소비자들이 좋은 쌀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고, 양곡가공업도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할 방침임(농림수산부).

: 국민 93.12.27.,6면; 동아 93.12.28.,11면; 한국 93.12.28.,8면; 한겨레 93.12.28.,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88~89면)·제8호(102면) 참조

#### ◎建設

##### ○건축법관련 개정의견

- 현재 시·군·구 공무원이 하는 중간건사와 사용검사(준공검사) 제도를 건축사등 민간감리자가 대신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준공검사권 민간이양후 부실공

사를 막기 위해 감리자에게 위법·부실시공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권을 주고, 추후 부실감리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며, 불법건축을 감시하는 별도 건축감시관을 두고, 이들에게 사법경찰권까지 부여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등을 징수할 방침임(건설부).

- 市이하의 번두리의 서민거주지역에서 대지 한 필지가 남아 있는 경우(이 경우는 부천시에 있는 한 필지의 대지가 진입로도 2개가 있고 사람의 통행에도 지장이 없는 데도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에는 건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과 제28조를 적용하지 말아야 할 것임.

: 조선 94.1.29.,9면;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51면)·제8호(105~106면) 참조

#### ○건축법시행령 개정의견

- 자가용차량의 과다이용을 억제하는 각종 방안을 강구하고 주거지역 주차난을 해소하며 기계식 주차시설은 건폐율 적용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 주거지역내의 주차시설 건축금지규제도 완화해 나가기로 함(건설부).

: 서울 94.1.16.,18면; 조선 94.1.16.,25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89면)·제9호(104면)·제10호(96~97면)·제11호(93면)·제13호(81면) 참조

####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의견

- 국토이용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해당 부동산 거래시 먼저 신고나 허가를 받은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하여 허가 없는 선계약은 무효로 하였는데 이는 거래관습에 현저히 배치되어 위법자를 양산하게 되는 것임.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의견

- 규제대상시설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은 본사용건물만을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허점등을 악용함을 막도록 건설부에 통보함(감사원).
- 전경련과 상공회의소등 경제단체의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한다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공업용 건축허가 면적을 총량규제 방식으로 관리, 수도권내 공업시설의 증가를 필요한 최소 범위내로 억제할 방침임(건설부).

- 느슨한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은 지역균형개발을 퇴색시켜 수도권집중 심화에 따른 주택·교통·환경문제를 악화시켰으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은 장기적인 국토개발 등 여러면에서 재검토 해야 함(이경 한겨레신문기자)
- 다른 지역에 대한 균형개발계획을 별도로 마련, 분산효과를 노려야 함(박상우 연구위원, 국토개발연구원)
- 규제완화와 더불어 광역적 수도권 정비계획의 수립과 지구단위의 건물용적의 총량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시급함. 수도권 공장규제의 경우 93년도 건축허가 면적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해마다 할당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운영상 ①본격적인 지자제 실시를 앞두고 중앙정부차원의 공업입지의 총량적 통제는 분권화된 개발행정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기업유치를 위해 시·군·구에서 각각 호의적 조건을 내놓고 선의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②수많은 제조업종간의 특성과 차이를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허가면적을 설정하다 보면 공간적인 최적배분이 될리 없고 시장기능을 왜곡하거나 프리미엄, 암거래가 생길소지가 있기 때문임(권원용 서울시립대학교수).-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오염물질 발생량이 대폭 늘어나 팔당 수질이 크게 악화될 것임(환경처).
- 개정안이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유발, 국토개발의 불균형, 주택 및 교통난 심화, 수질·대기오염 등 환경파괴등의 부작용이 많다고 보고 건축규제완화폭을 축소하는등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임(건설부).

: 서울 94.1.5.,2면; 서울 94.1.29.,9면; 한겨레 94.1.28.,7면; 세계 94.1.28.,5면; 한국 94.1.30.,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4호(36면)·제8호(108~109면)·제11호(93~94면)·제13호(83면) 참조

#### ○주차장법 개정의견

- 주차형식에 따라 5~6.5m의 간격을 확보해야 하는 차도의 폭을 출입이 가능할 경우 주차장 여건에 따라 2.5m이상만 확보하면 되고, 공영주차장을 사용하

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시장, 군수에게 납부하는 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서면신고하도록 하고있는 노외주차장 설치완료신고를 구두신고로 간소화함.

: 국민 94.1.6.,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0호(96면) · 제12호(99면) 참조

#### ○주택건설시상린규제관련 입법의견

- 이웃의 동의를 받아 주택건설 및 준공검사를 마친 후 이웃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자에게 민사적 해결에 더하여 형사적 처벌까지 가해야 함.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의견

-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준주거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게하고 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건물 규모는 1백만가구 미만으로 하되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택 이외의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상업지역(50%)과는 달리 30%만 되면 허용키로 해 주거기능을 살리기로 함(건설부).

- 아파트 경비의 효율화를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해 용역경비업법에 의해 채용된 경비원으로 하여금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방범을 전담케 함과 동시에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서장이 이들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경찰청).

: 서울 94.2.1.,8면; 경향 94.2.3.,2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90면) 참조

#### ○토지(임야)거래허가제관련 입법의견

- 임야의 경우 바위,경사,습지 등을 제외하면 사용가능면적이 아주 적은 바 투기 목적이 아닌 상속받은 1,000평 정도는 절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신고제로 하여 매매를 쉽게 할 필요가 있음.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하수도법시행령 개정의견

-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지역내 공장은 중금속이나 일정기준 이상의 고농도 폐수를 제외한 일반폐수는 자체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배출하는 것을 허용키로 하고 하수도시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군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한 공공법인체도 하수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건설부).

: 한국 94.1.8.,7면

◎科學技術·交通·遞信

○도로교통법 개정의견

- 중앙선 침범과 과속에 대해 현재 최고 5만원인 교통법칙금을 1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함(교통부).

: 서울 94.1.16.,18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3호(86면) 참조

○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의견

- 오는 6월부터 택시와 시외버스에 자동운행기록계인 타코미터기 부착을 의무화하여 각종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운전자들의 안전한 운행 습관을 정착시켜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함(교통부).

: 서울 94.1.21.,23면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의견

- 통신사업자간의 경직된 사업영역 구분을 없애고 통신사업을 새로 시작하기를 원하는 기업에 가하던 까다로운 규제와 조건들도 거의 폐지키로 함(체신부).

: 조선 94.1.15.,2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54~55면)·제3호(69~70면) 참조

◎環境・保健

○공중구강보건법(가칭) 제정의견

- 상수도 불소화, 학교 구강보건사업, 1천1백여 공중보건의를 활용한 지역 보건사업 등을 강제할 「공중구강보건법(가칭)」 제정을 관철할 계획임(치과의사회).

: 한겨레 94.1.11.,10면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등에는 검사항목으로 되어있으나 국내에는 없는 발암물질인 벤젠과 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인 톨루엔을 조속한 시일내에 수질검사 항목에 추가키로 하고 현행 검사항목중 납과 망간 등 선진국보다 기준치가 낮은 일부항목의 기준을 강화하고 수질검사 항목을 95년까지 57개 항목으로, 97년에 85개 항목으로 늘리기로 함(보건사회부).

: 동아 94.1.15.,3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95면) · 제8호(115면) 참조

○국민건강증진법(가칭) 제정의견

- 지금까지 1차검진 및 예방주사 접종등 단순한 국민보건기능에 머물러온 전국 2백여개의 보건소를 건강증진센터로 개편, 지역주민의 성인병 조기진단 및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하며, 시민과 보건단체회원으로 구성된 건강실천협의회를 시·군·구별로 설치, 건강마라톤 생활체육등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증진계획에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임. 한국담배인삼공사, 담배수입판매업자, 의료보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 '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하여 보건교육과 건강증진센터로 개편, 국민 개개인의 건강증진체제로 활용하고 별도의 첨단건강증진센터를 전국 요소에 신설키로 함(보건사회부).

: 한국 94.1.31.,30면; 조선 94.1.31.,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호(107면) · 제11호(98면) 참조

○수질관리일원화관련 입법의견

- 원수·정수수질 관리기능을 통합, 수질관리는 환경처로 일원화하며 이에 따라 보사부의 음용수기준 설정과 생수시판 허용여부, 지자체의 약수터관리등은 환경처로 이관하고 수량관리를 관장하는 건설부는 댐등 수자원관리를 계속 맡게 할 방침임(이희창 국무총리).
- 수질관리체계개선작업단 발족을 결정하면서 수질관리 일원화를 위해서는 건설부의 정수장관리와 상·하수도업무가 반드시 환경처로 이관돼야 함(환경처).
- 물관리 행정의 조속한 통합으로 물문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면 토지이용계획의 조정부터 정수처리시설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부처간의 협조도 원활해지면서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으므로 환경행정이 개발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맑은 물 정책을 조정하고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처를 환경부로 확대개편해야함(신창현 환경정책연구소장).

: 한국 94.1.17.,1면; 한겨레 93.12.23., 9면; 한겨레 94.1.15.,1면

○약사법시행령 개정의견

- 지금까지 약사면허취득자에 한해 약국을 개설토록 하고 일반법인의 약국개설을 불허하는 규정을 바꿔 기업등 일반법인에 대해서도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약국의 판매력 강화를 위해 약국의 시설기준을 대폭 강화, 현재 15m<sup>2</sup>(4.6평)로 제한하고 있는 약국의 시설기준을 30m<sup>2</sup>(9.2평)로 상향조정키로 함. 「약사법」상 강제규정을 두어 1약국 2약사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함(보건사회부).
- 개방화시대와 의약분업에 대비, 약국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강화는 이해되나 1약국 2약사제의 강제 시행등은 가뜰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약국들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이병욱 약사).

: 경향 94.1.24.,2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1호(99~100면) 참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관련 입법의견

-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대학 또는 전문대에서 응급처치학 전공자, 외국의 응급

구조사 자격증 취득자, 의사 및 간호사,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이수자 등에게 주기로 규정하고, 대학 또는 전문대에서 응급처치학과가 신설돼 있지 않아 응급구조사를 별도 양성기관에서 배출할 수 밖에 없으므로 대한적십자사등에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설치할 계획임(보건사회부).

: 세계 94.1.31.,2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호(109~110면) · 제11호(100~101면) · 제13호(94면) 참조

#### ○정신보건법(가칭) 제정의견

-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에 근접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보건법」의 제정이 시급함. 강제적 치료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해서 극히 조심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하겠지만 정신질환자의 범죄행위로부터 사회를 지금처럼 방치할 수 없는 것임(동아일보 사설).

: 동아 94.1.21.,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3호(94~95면) 참조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의견

- 불법 수입된 폐기물에 대해 강제반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할 방침이며 사전허가없이 폐기물을 수입하거나 반출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산업폐기물의 국내유통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부산녹산·전남여천공단등에 재활용관련업체를 집단 유치하는 재활용전문단지 조성하기로 함(상공자원부).

: 한국 94.2.3.,2면

#### ○학교보건법 개정의견

- 당구장·술집·전자오락실을 비롯한 모든 유해업소의 출입이 비행충동과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문제로 제도적 부적응을 일으켜 유해업소에 드나드는 경우보다 업소가 있기 때문에 출입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음(김문조 고려대교수, 『청소년 유해시설 및 장소의 실태와 개선대책』).



- 유해환경에 대한 이해관계가 가장 깊은 해당 학교교사들과 교육청 관련자들이 행정단속이나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고 경찰서나 구청등 유관기관들과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있는 단속이 어려움(서울시교육청).
- 정부관계부처가 현재 추진중인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설정과 함께 국민 모두가 주거지역과 학교인근에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함(허억 사고예방실장, 어린이교통안전협회).
- 「학교보건법」이 금지행위와 시설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각종 기준 역시 현실성이 없었음(김홍주 연구위원, 교육개발원).
- 우리 실정에 맞는 효율적 안전대책 수립과 어린이들에 맞는 교통시설 개선에 초점을 두고 어린이 보호구역설정과 구역내 시설정비등 세부계획을 마련 중인데, 우선 학교주변에서 일률적으로 교통규제를 하기 보다 각 학교장과의 협의 하에 유동성있게 보호구역을 설정해 등·하교길 동선을 따라 교통관리를 강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며 어른 보폭 1을 기준으로 편성된 신호등 녹색신호의 주기를 조정하거나 등·하교길 횡단보도에 신호등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할 계획임(경찰청).

: 한국 94.1.21., 13면

#### ○환경범죄관련 입법의견

- 낙동강 오염사태로 정부의 수질관리대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폭되고 있으나 「수질환경보전법」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환경오염사범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인데다 처벌규정조차 없어 단속기준의 강화와 관계법 정비 등이 시급함. 적발된 사범 중 환경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실정법상 엄격한 처벌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실행보다 벌금·과태료에 그쳐 재범이 되풀이되는 실정이며 이는 수질환경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이 상수도원 오염행위, 각종 유해 오염물질배출, 무허가 비밀배출구 설치, 배출시설 비정상가동, 상습·반복·고질적 환경사범, 환경오염물질의 불법제조 등 포괄적인데다 과실로 인정할 경우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임. 벤젠·톨루엔 등 발암성 물질에 대해서는 기존 「수질환경보전법」에 처벌조항이 없을 뿐 아니라 「환경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은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를 위협하거나 사람을 사상할 경우’라는 포괄적인 적용요건을

갖추고 있음(검찰).

: 한겨레 94.1.16.,15면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의견

- 기업체의 유해물질 불법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배출장부의 기록 및 관리태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고 현재의 과태료 부과중심에서 형사처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며 유해물질배출업체에 대해 특별조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음(검찰).

: 경향 94.1.17.,23면

○환경정보법(가칭) 제정의견

- 낙동강 수질오염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학계, 기업 등에 흩어져 있는 각종 환경정보 및 자료수집을 강화하고, 이를 공개토록함(최열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

: 조선 94.1.17.,3면

○환경정책완화관련 입법의견

- 중소배출업소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이유로 측정회수를 축소하였으나 1993.7.31. 인상된 고시가에 의해 1회 측정 수수료를 산정해 볼 때 대기, 수질 5종업소 각 월 10,000원의 비용은 결코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없음. 즉 철저한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4.5종 배출업소의 경우 최소한 월1회 이상의 측정이 필요함. 또 환경지도단속의 환경처로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오염물질의 측정분석업무는 보호의 필요가 있다.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法院·法務

○민사소송법 개정의견

- 민사소송법 제692조 대체집행조문을 삭제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중

1990.1.13. 삭제된 제5조를 부활, 민사소송법 제478조를 판결정본은 강제집행의 효력이 있다라고 개정하고 나머지는 삭제.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변호사법 개정의견

- 변호사등록 실질심사제는 비리를 저지른 판·검사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숨겨진 채 의원면직등의 형식으로 사퇴함에 따라 이 경우 변협이 변호사등록을 거부하려해도 사실심사와 등록거부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땅히 없었던 데 따른 것이므로 변협은 비리나 부정의 혐의가 있는 판·검사를 직접 불러 소명하게 하는 등 실질적인 조사권을 가지며 조사결과에 따라 변호사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판정을 받은 경우 다시는 변호사로서 등록을 할 수 없게 함(대한변호사협회).

- 변호사법 제17조제2항을 신설하여 변호사가 직접 사실을 조회할 수 있게 함.

: 경향 94.2.5.22면;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2호(58면)·제3호(74~75면)·제4호(42면)·제6호(103면) 참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의견

- 지금까지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부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법무사에게 수수료(2천5백원)를 지급, 열람조서를 받아야 했던 등기부 열람조서의 발급 절차를 개선, 민원인이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행정쇄신위원회).

: 서울 94.1.8., 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60면) 참조

#### ○사법부개혁관련 입법의견

- 사법위가 내놓은 상고허가제는 행정의 편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자하는 위헌적 발상임. ①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의 2배인 24명으로 늘리거나 ②대법관이 아닌 일반판사를 대폭증원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과거 권위주의시대에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던 서울형사지법을 민사지법과 통합하고 법관인사위를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하여 대법관의 인사권 독점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함(대한변호사협회).

- 사법위가 확정해 내년 2월 대법원장에게 건의키로 한 사법제도 개혁안은 ①법관회의 입법화, ②상설 간이법원 설치, ③부판사제 도입, ④법관인사위원회 기능강화, ④노동, 조세등 전문법원설치, ⑤법관임용자격 강화, ⑥행정사건 3심제, ⑦특허소송법원 2심제 등임. 지금까지 월 1회 꼴로 벌금이나 소액사건을 다뤘은 순회심판소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전국 1백9개소에 상설 간이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확정함(사법제도발전위원회).
- 상고허가제의 전제조건으로 ①이를 위하여 대법원이 실천을 다짐한 법관임용 자격 강화, 집중심리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하급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하고, ②대법원이 실천을 다짐함의 재판편의만을 위해 상고사건 수리거부가 남용되어선 안되며 이를 위해 현재 14명의 2배인 24명으로 늘리며, ③파기를 전제로 수리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법인가를 선언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수리기준으로 하여야 함(동아일보 사설).
- 무한정 쏟아져 들어오는 모든 상고사건에 대법원이 균등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은 곧바로 정당한 권리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와 배치되고 재판의 확정을 지연시키며 대법관이라는 최고의 재판인력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배려를 빼앗아가는 남용적인 상고는 제한해야 함(이상훈 서울고법판사).
- 상고사건에 대한 소송당사자의 수요가 많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소송당사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판결로 말하는 것이 바른 길이지 상고사건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임. 상고허가제는 헌법상 보장되는 3심제를 사실상 2심제로 전환하려는 것이고 시행되다 폐지된 전례, 특히 지난시절 지나치게 형식적이던 운용의 실태를 검토해봐도 제도입보다는 대법원의 구성을 이원화하고 대법원 보조인력을 확충하는 방법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최재천 변호사).
- 상고허가제는 ①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할 위험성이 있고, ②상고범람을 통제로 막으려는 것은 사법민주화의 방향과 거리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스스로 상고를 절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함(김일수 고려대교수).
- 관료제적 사법구조를 타파하고 독과점적인 법률서비스 시장을 구조적으로 혁신해 재판의 능률 및 전문성을 제고해야 함(양건 한양대교수, 『신정부개혁 1년을 평가한다』 심포지엄).

: 동아 93.12.17.,30면; 동아 93.12.29.,3면; 동아 94.1.17.,5면; 경향 94.1.4.,23면; 경향 94.1.5.,22면; 서울 94.1.8.,6면; 세계 94.1.17.,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2호(107~110면) · 제13호(100~103면) 참조

○형사소송법 개정의견

-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 공소시효를 넘긴뒤 형사처벌을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해외도피 범법자는 도피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기로 함(법무부).
- 형사소송법은 제35조 중 ‘소송계속중의’를 ‘소송제기전의’로 바꾸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후단을 개정하여야 함.

: 한국 94.1.10.,31면;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2호(110면) · 제13호(105~106면) 참조

## Ⅱ. 주요입법예고법률안

### 1. 주요입법예고법률안목록

(1993.12.11.~ 1994.2.10)

◎社會·教育·文化 .....	87
○교육법중개정법률안	
◎産業·經濟 .....	88
○민자유치촉진법제정안	
○에너지및자원사업법제정법률안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	
◎農林·水産 .....	91
○농어촌특별세법안	
○가축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축산물위생처리법중개정법률안	
◎環境·保健 .....	94
○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法院·法務 .....	95
○공증인법중개정법률안	

## 2. 주요입법예고법률안내용

(1993.12.11. ~ 1994.2.10)

### ◎社會·教育·文化

#### ○교육법중개정법률안

##### 1. 개정취지

신경제5개년계획 추진에 필요한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현장 전문기술자를 교사로 활용하고자 이들에 대한 교사자격을 신설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

- (1) 대학 졸업자로서 대학의 전공학과와 동일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1급 또는 기능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현장 전문기술자 경력 5년이상 소정의 교직연수를 받은 자

###### 나. 중등학교 준교사

- (1) 대학 졸업자로서 대학의 전공학과와 동일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기사 1급 또는 기능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현장 전문기술자 경력 3년이상 및 소정의 교직연수를 받은 자
- (2) 대학·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실기교사의 교육경력이 5년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 (3) 실업계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로서 실기교사의 교육경력이 7년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 (4)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실기교사의 교육경력이 7년이상 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 ◎産業・經濟

### ○민자유치촉진법제정안

#### 1. 제정이유

본 법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정비·확충함에 있어 민간의 투자를 촉진시켜 국민생활의 수준 향상과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현재 각 개별법에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근거는 있으나 대부분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거나 수익성 보장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 이므로, 본 법에 다양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민자유치촉진을 위한 절차 및 지원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민자유치대상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범위와 소유권 귀속

-모든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민자유치대상으로 하되 사회간접시설을 기본시설과 기타시설로 구분하여 소유권 귀속을 차별

##### 나. 사업추진 체계와 절차

-민자유치기본계획의 수립·고시

-사업의 분할시행 기능

-민자유치사업 시행주체의 유형

.민간법인:민간부문만이 출자, 참여하는 법인

.공공법인:공공부문 출자비율이 50%이상인 민관합동법인

.공공법인 이외의 민관합동법인:공공부문 출자비율이 50%미만인

민관합동법인

##### 다. 민간유치를 위한 유인장치

-각종 인·허가의 의제처리로 신속한 사업추진 도모

-토지수용 근거의 마련

-국·공유재산의 무상사용등

-각종 부담금감면 및 세제지원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민간출자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토록 함.



-기본시설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토록 시설관리운영권의 분할·합병·처분·저당을 가능케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장기대부 근거 마련

#### 라. 경영권 보장 및 수익성 확보장치

-국가에 귀속되는 기본시설의 시설관리운영 권자는 총사업비 회수기간동안 안정적인 경영권을 보유하며, 국가가 공익목적으로 경영권을 변경시 해당 손해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하여 사업시행자를 보호

-민자유치대상 사회간접자본시설중 기본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주변지역개발등 수익성 부대사업을 허용

-국가귀속 시설에 대해서는 무상사용 기간을 미리 법률로 정하지 않고 사업별로 투자비가 회수되는 시점까지 탄력적으로 사용 허용

-사회간접자본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되는 사용료의 결정방식을 정부의 사전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민·관합동법인의 경우, 민간출자분에 대해서는 차등배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설치·운영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재원을 차입하는 사업시행자의 신용보증을 위한 기금설치·운용

-기금의 조성:정부, 금융기관, 경제단체 및 민자사업 참여법인등의 출연금

#### 바. 기타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공공성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감독장치만을 마련

-본법 시행이전에 타법에 의해 인·허가된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 ○에너지및자원사업법제정법률안

#### 1. 제정취지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 재정개혁부문에서 사업성격이 유사한 특별회계 및 정부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재정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상공자원부는 현재의 석유사업기금, 석탄산업육성기금, 석탄산업안정기금, 에

너지이용합리화기금 및 해외자원개발기금 이상 에너지 및 자원관련 5개기금을 통합,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2. 제정안의 주요내용

- 가.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관리·운영하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
- 나. 회계는 투자계정과 용자 및 유가완충계정으로 구분하고 투자계정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에 대한 투자, 보존, 출연등을 담당하고, 용자 및 유가완충계정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에 대한 용자와 국내석유가격의 안정적관리를 위한 유가완충기능을 수행함.
- 다. 회계의 재원은 석유등 수입 에너지원에 대한 부과금징수분과 기존 5개기금유자원리금수입을 승계하고 이에 더하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달함.
- 라. 실효성있는 유가완충을 위하여 회계연도내사용되지 아니한 유가완충예산액은 비상시에 대비 적립하도록 하고, 국제유가급등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차입금등과 함께 지출하도록 함.
- 마. 석유사업기금이 특별회계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 석유비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석유사업기금 소관 석유비축자산을 한국석유개발공사에 이관함.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

### 1. 개정취지

노령화 사회로의 진전에 대비하여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를 확충하고 금융실명제의 실시 및 금리하락등으로 일반국민의 저하된 저축심리를 북돋아 장기주를 유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저축기반을 넓히고 장기산업자금의 조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신설함.

### 2. 주요내용

- 가. 개인 연금저축의 종류는 개인연금보험 및 개인연금신탁으로 하되 저축기

간·저축방법·가입자격·연금지급시기등 저축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함.

나.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계산시 당해 연도에 불입저축금액의 40%를 연간 72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하도록 하고, 당해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리 형태로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다. 장기연금저축 가입자가 동 저축을 중도해약한 경우에는 저축금액의 4%를 소득세로 추징하되 연금저축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약한 경우에는 세액추징을 배제함.

## ○農林·水産

### ○농어촌특별세법안

#### 1. 제정취지

이 법은 농·어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경제력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촌의 생활여건의 개선등 농어촌 발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우루과이라운드타결에 따른 농어촌 종합대책의 원활한 수행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받나 감면받는 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취득세 및 경주·마권세 납세의무자

##### 나. 비과세

-다음의 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면

·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

· 저축기간이 5년이상인 장기저축의 이자에 대한 감면

·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하천, 제방등에 대한 지방세감면등

-자경농민등이 취득하는 농지·임야에 대한 취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다. 과세표준과 세율

호별	과 세 표 준	세 율
1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비과세·감면세액	100분의 20
2	저축이자에 대한 비과세·감면세액, 저축세액공제금액	100분의 10
3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
4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주권의 양도가액	1천분의 1
5	취득세액	100분의 10
6	경주·마권세액	100분의 20

라. 신고·납부등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당해 세목을 신고·납부할때 함께 신고·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인 저축이자등을 지급할때 농어촌특별세를 원천징수

마. 시행기간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2004년6월30일까지 시행(10년간)

-다만,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 1억원 초과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1994년 1월1일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적용

바. 적용례

-소득세등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1994년 7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저축이자등에 대한 가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1994년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저축금액부터 적용

-관세감면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1994년7월1일이후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 증권거래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1994년 7월 1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분부터 적용
-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이나 납부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1994년 7월 1일 이후 취득·등기·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 재산세·종합토지세의 감면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1994년 7월 1일 이후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 경주·마권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1994년 7월 1일 이후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는 분부터 적용

## ○가축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 1. 개정취지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개정된지 장기간이 경과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어서 이를 보완하고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선 다변화 및 수입개방화에 대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정한 A급질병과 전파력이나 피해가 큰 가축전염병을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추가함.
- 나. 제1종가축전염병을 제2종가축전염병보다 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정
- 다. 휴대검역물에 대한 검역결과 불합격시에는 검역관이 스스로 폐기할 수 있도록 함.
- 라. 농림수산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외의 전염성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동물검역소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 마. 국립동물검역소장은 동물수입시 계류능력등을 감안하여 수입시기, 수입물량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바. 검역관은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받고도 일정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할때는 재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사. 벌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함.

## ○축산물위생처리법중개정법률안

## 1. 개정취지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사규정, 부정축산물의 범주, 미검사품 및 검사불합격품의 처리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가. 축산물의 정의에 계란을 포함시켜 위생적이고 등급화된 계란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고 원유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검사원 외에 원유검사보존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나. 축산물의 처리 및 검사방법과 기준을 정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 내용에 잔류물질, 병원미생물시험방법등을 포함하여 수출입 축산물의 검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563호)에 의거 보건 사회부장관으로부터 농림수산부장관 및 동물검역소장에게 위임·위탁된 수입축산물의 신고와 검사업무 실시규정을 신설하였음.

라. 수축에 대하여 강제로 물을 먹이는 행위외에 수육에 고의적으로 물을 넣는 주수행위에 대하여도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축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음.

마. 불합격된 수축 및 축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음.

바. 축산물작업장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중 영업정지 사항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정지에 따른 관내 양축농가 및 정육업자의 불편해소와 축산물 수급상 문제점을 해결토록 하였음.

## ◎環境・保健

### ○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1. 개정취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가입(1993.7.

9) 및 생물다양성협약의 가입예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 또는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생물다양성협약의 국내법수용에 따라 생물다양성, 생물자원등의 용어를 정의함.
- 나. 생물다양성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국제협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다. 생물다양성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구성요소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를 생물자원의 보전에 적절하게 이용하도록 함.
- 라.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국가정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처장관 소속하에 생물다양성보전위원회를 둠.
- 마. 생물다양성의 보전,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현지내 및 현지외보전; 생물자원보전 및 생물다양성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등 정부가 하여야 할 조치사항을 규정함.
- 바. 국내생물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거나 외국인 등이 생물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처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함.
- 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승인없이 수입 또는 반입한 경우 반송을 명하거나, 압류·몰수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아.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은 수입 또는 반입의 목적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해·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에 대하여는 수입제한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法院·法務

### ○공증인법중개정법률안

#### 1. 개정취지

종래 공증인의 임기만료 후 1차에 한하여 재임명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

하여 계속 재임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증업무의 전문성확보 및 연속성을 유지하고, 현재 결원이 많은 공증인의 충원을 유도하여 법적분쟁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공증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공증인의 임기를 1차에 한하여 재임명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 Ⅲ. 최신법령 목록

(1993.12.11. ~ 1994.2.10)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법 률 4602	해외이주법중개정법률	1993.12.27
4603	재외공관공증법중개정법률	1993.12.27
4604	농어촌도로정비법중개정법률	1993.12.27
4605	공물영업법폐지법률	1993.12.27
4606	민방위기본법중개정법률	1993.12.27
4607	사행행위등규제법중개정법률	1993.12.27
4608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	1993.12.27
4609	정당법중개정법률	1993.12.27
4610	유선및도선업법중개정법률	1993.12.27
4611	지방세법중개정법률	1993.12.27
4612	소방법중개정법률	1993.12.27
4613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	1993.12.27
4614	군인공제회법중개정법률	1993.12.27
4615	방어해면법중개정법률	1993.12.27
4616	군사기밀보호법중개정법률	1993.12.27
4617	군사시설보호법중개정법률	1993.12.27
4618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1993.12.27
4619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1993.12.27
4620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	1993.12.27
4621	교육법중개정법률	1993.12.27
4622	공산품품질관리법개정법률	1993.12.27
4623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	1993.12.27
462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1993.12.27
4625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	1993.12.27
4626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	1993.12.27
4627	수도법중개정법률	1993.12.27
4628	부동산중개업중개정법률	1993.12.27
4629	임대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1993.12.27
4630	한국수자원공사법중개정법률	1993.12.27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4631	항정신성의약품관리법중개정법률	1993.12.27
4632	마약법중개정법률	1993.12.27
4633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	1993.12.27
4634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	1993.12.27
4635	결핵예방법중개정법률	1993.12.27
4636	공중위생법중개정법률	1993.12.27
4637	가정의례에관한법률개정법률	1993.12.27
4638	기능대학법중개정법률	1993.12.27
4639	직업훈련기본법중개정법률	1993.12.27
4640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1993.12.27
46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	1993.12.27
4642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	1993.12.27
4643	고용정책기본법	1993.12.27
4644	고용보험법	1993.12.27
4645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	1993.12.27
4646	자동차저당법개정법률	1993.12.27
4647	항공법중개정법률	1993.12.27
4648	철도법중개정법률	1993.12.27
4649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1993.12.27
4650	통신비밀보호법	1993.12.27
4651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중개정법률	1993.12.27
4652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1993.12.27
4653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1993.12.27
4654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	1993.12.27
4655	한국자원재생공사법	1993.12.27
4656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	1993.12.27
4657	환경관리공단법중개정법률	1993.12.27
4658	참전군인등의지원에관한법률	1993.12.27
4659	예산회계법중개정법률	1993.12.31
4660	기본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	1993.12.31
4661	소득세법중개정법률	1993.12.31
4662	상속세법중개정법률	1993.12.31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4663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1993.12.31
4664	법인세법중개정법률	1993.12.31
4665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1993.12.31
4666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1993.12.31
4667	교통세법	1993.12.31
4668	주세법중개정법률	1993.12.31
4669	교육세법중개정법률	1993.12.31
4670	증권거래세법중개정법률	1993.12.31
4671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1993.12.31
4672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	1993.12.31
4673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	1993.12.31
4674	관세법중개정법률	1993.12.31
4675	국채법개정법률	1993.12.31
4676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1993.12.31
4677	공공자금관리기본법	1993.12.31
4678	증권투자신탁업법중개정법률	1993.12.31
4679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1993.12.31
4680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1993.12.31
4681	단기금융업법중개정법률	1993.12.31
4682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	1993.12.31
4683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	1993.12.31
4684	지방양여금법중개정법률	1993.12.31
4685	군역법개정법률	1993.12.31
4686	향토예비군설치법중개정법률	1993.12.31
468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	1993.12.31
4688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개정법률	1993.12.31
4689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	1993.12.31
469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개정법률	1993.12.31
4691	양곡증권법개정법률	1993.12.31
4692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법	1993.12.31
4693	대덕연구단지관리법	1993.12.31
4694	유선방송관리법중개정법률	1993.12.31
4695	군인사법중개정법률	1993.12.31

공 포 번 호	진 명	공포연월일
4696	조달기금법중개정법률	1994. 1. 5
4697	조달사업에관한법률	1994. 1. 5
4698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	1994. 1. 5
4699	신용카드업법중개정법률	1994. 1. 5
4700	상품권법개정법률	1994. 1. 5
4701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1994. 1. 5
470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994. 1. 5
4703	균형법중개정법률	1994. 1. 5
4704	군사법원법중개정법률	1994. 1. 5
4705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1994. 1. 5
4706	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	1994. 1. 5
4707	양곡관리법개정법률	1994. 1. 5
4708	국가안전기획부법중개정법률	1994. 1. 5
4709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중개정법률	1994. 1. 5
4710	협동연구개발촉진법	1994. 1. 5
4711	기술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	1994. 1. 5
471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	1994. 1. 5
4713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관한법률	1994. 1. 5
4714	환경개선특별회계법	1994. 1. 5
4715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1994. 1. 7
4716	특수교육진흥법개정법률	1994. 1. 7
4717	저작권법중개정법률	1994. 1. 7
4718	지방문화원진흥법	1994. 1. 7
4719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1994. 1. 7
4720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1994. 1. 7
4721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	1994. 1. 7
4722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1994. 1. 7
4723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	1994. 1. 7
4724	건설업법중개정법률	1994. 1. 7
4725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중개정 법률	1994. 1. 7
4726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1994. 1. 7

공 포 번 호	진 명	공포연월일
4727	대한적십자사조직법중개정법률	1994. 1. 7
4728	의료보험법중개정법률	1994. 1. 7
4729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중개정 법률	1994. 1. 7
4730	응급의료에관한법률	1994. 1. 7
4731	약사법중개정법률	1994. 1. 7
4732	의료법중개정법률	1994. 1. 7
4733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	1994. 1. 7
4734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1994. 1. 7
4735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1994. 1. 7
4736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개정법률	1994. 1. 7
4737	종합유선방송법중개정법률	1994. 1. 7
조 약 1206	북서대서양다자간장래어업협력에관한협약	1993.12.23
1207	대한민국과호주간의형사사범공조조약	1993.12.27
1208	대한민국정부와우루과이동방공화국정부간의 외교관및관용여권에대한사증의상호면제에관 한교환각서	1994. 1. 5
1209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 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 지위에관한협정제5조에대한특별조치에관한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협정	1994. 1. 5
1210	대한민국정부와이집트아랍공화국정부간의 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 위한협약	1994. 1.15
1211	폐기물및그밖의물질의투기에의한해양오염 방지에관한협약	1994. 1.21
1212	대한민국정부와핀란드공화국국정부간의사증 면제협정의개정에관한교환각서	1994. 1.29
대통령령 14018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1993.12.11
14019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시행령개정령	1993.12.11
14020	산림조하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11
14021	국유재산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13
1402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13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14023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3.12.13
14024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1993.12.14
14025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14
14026	축산법시행령개정령	1993.12.14
14027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	1993.12.27
14028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93.12.27
14029	도시공원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27
14030	도시철도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27
14031	고물영업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28
14032	인감증명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28
14033	행정감사규정중개정령	1993.12.28
14034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28
14035	최저임금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29
14036	재외공관공증법시행령	1993.12.31
14037	재외공관공증수수료규정중개정령	1993.12.31
14038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31
14039	지방양여금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31
14040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31
1404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31
14042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1993.12.31
14043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93.12.31
14044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31
14045	관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 관한규정중개정령	1993.12.31
14046	관세법제10조의규정에의한인쇄제판용평면상 사진플레이트에대한덤핑방지관세의부과에 관한규정	1993.12.31
14047	관세법제10조의규정에의한소다외에대한덤핑 방지관세의부과에관한규정	1993.12.31
14048	관세법제43조의8의규정에의한레몬등의관세율 변경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93.12.31

공 포 번 호	진 명	공포연월일
14049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 규정개정령	1993.12.31
14050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시행령중개정령	1993.12.31
14051	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 관한규정중개정령	1993.12.31
14052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31
14053	번호사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31
14054	공증인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31
14055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31
14056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	1993.12.31
14057	양곡증권법시행령개정령	1993.12.31
14058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31
14059	특허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31
14060	의장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31
14061	특허등록령중개정령	1993.12.31
14062	부정경쟁방지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31
14063	중기관리법시행령개정령	1993.12.31
14064	중기저당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31
14065	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31
14066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31
14067	의료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31
14068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31
14069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31
14070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31
14071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93.12.31
14072	유선및도선업법시행령개정령	1993.12.31
14073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1993.12.31
14074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1993.12.31
14075	국세징수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31
14076	국세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31
14077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	1993.12.31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14078	교통세법시행령	1993.12.31
14079	국채법시행령개정령	1993.12.31
14080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31
14081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31
14082	상속세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31
14083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31
14084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31
14085	주세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31
14086	증권거래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31
14087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31
14088	교육세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31
14089	관세법제12조의2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 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93.12.31
14090	어선법시행령개정령	1993.12.31
14091	어항법시행령개정령	1993.12.31
14092	석탄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31
14093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31
14094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법시행령	1993.12.31
14095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1993.12.31
14096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1993.12.31
14097	공무원임용시험령중개정령	1993.12.31
14098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개정령	1993.12.31
14099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31
14100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31
14101	삭도·궤도사업법시행령개정령	1994. 1.17
14102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중개정령	1994. 1.17
14103	국무총리비서실직제중개정령	1994. 1.17
14105	정무장관실직제중개정령	1994. 1.17
14106	비상기획위원회규정중개정령	1994. 1.17
14107	경제기획원직제중개정령	1994. 1.17
14108	공정거래위원회직제중개정령	1994. 1.17
14109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4. 1.17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14110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 1. 17
14111	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 1. 17
1411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직제증개정령	1994. 1. 17
14113	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 1. 17
14114	과학기술처와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 1. 17
14115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 1. 17
14116	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 1. 17
14117	공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 1. 17
14118	법제처직제증개정령	1994. 1. 17
14119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 1. 17
14120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 1. 17
14121	재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 1. 17
14122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 1. 17
14123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 1. 17
14124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 1. 17
14125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증개정령	1994. 1. 17
14126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 1. 17
14127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 1. 17
14128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 1. 17
14129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 1. 17
14130	농림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 1. 17
14131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 1. 17
14132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 1. 17
14133	수산청과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 1. 17
14134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 1. 17
14135	무역위원회직제증개정령	1994. 1. 17
14136	공업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 1. 17
14137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 1. 17
14138	건설부와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 1. 17
14139	보건사회부와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 1. 17
14140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 1. 17
14141	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 1. 17
14142	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 1. 17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14143	해운항만청과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 1.17
14144	수도국직제증개정령	1994. 1.17
14145	체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 1.17
1414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시행령증개정령	1994. 1.17
14147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증 개정령	1994. 1.17
14148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 1.17
14149	서울특별시과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 1.17
14150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 1.17
14151	농어촌발전위원회규정	1994. 1.28
14152	교원자격검정령증개정령	1994. 1.29
14153	보건사회부와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 1.29
14154	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 1.29
14155	체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 1.29
총리령 442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1993.12.11
443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증개정령	1993.12.31
444	유선방송관리법시행규칙증개정령	1993.12.31
445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증개정령	1993.12.31
446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증개정령	1993.12.31
447	보존문서열람수수료에관한규칙증개정령	1994. 1. 3
448	통계사무소출장소설치에관한규칙증개정령	1994. 1. 3
내무부령 599	고물영업법시행규칙폐지령	1993.12.28
600	도로교통법시행규칙증개정령	1993.12.29
601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증개정령	1993.12.31
602	지방세법시행규칙증개정령	1993.12.31
603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증개정령	1993.12.31
604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규칙	1993.12.31
605	소방용기계·기구등의검정에관한규칙증 개정령	1994. 1.26
재무부령 1951	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증개정령	1993.12.15
1952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증개정령	1993.12.31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1953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12.31
1954	교통세법시행규칙	1993.12.31
1955	주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12.31
1956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12.31
1957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12.31
1958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12.31
1959	법률제4674호관세법중개정법률부칙제7조의 규정에의한첨단기술산업등에관한관세감면규칙	1993.12.31
1960	담배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12.31
1961	국채법시행규칙	1994. 1.21
법 무 부 령 379	검찰보존사무규칙중개정령	1993.12.31
380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중개정령	1993.12.31
381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 규칙중령	1993.12.31
382	소년원및소년감별소급여규칙중개정령	1994. 1.21
교 육 부 령 642	산업교육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12.30
문 화 체 육 부 령 8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 관한규칙	1993.12.30
9	공연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12.30
10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시행규칙 폐지령	1994. 1. 6
농 립 수 산 부 령 1130	해외가축전염병및원예환경연구에관한한시조 직설치규칙중개정령	1994. 1.11
1131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 법률시행규칙	1994. 1.19
상 공 자 원 부 령 20	특허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12.31
21	실용신안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12.31
22	의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12.31
23	상표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12.31
24	특허등록령시행규칙중개정령	1993.12.31
25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중개정령	1993.12.31
26	의장등록령시행규칙중개정령	1993.12.31
27	상표등록령시행규칙중개정령	1993.12.31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28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 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중개정령	1993.12.31
건설부령 539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12.14
540	도시공원법시행규칙개정령	1993.12.30
541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12.31
542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12.31
543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12.31
544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	1993.12.31
보건사회부령 922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중개정령	1993.12.27
923	의료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12.31
노동부령 88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4. 1. 7
교통부령 1019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1. 8
체신부령 867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1993.12.28
868	전자과장해검정규칙중개정령	1994. 1.11

국내입법의견조사(종교법인법)94-1

---

1994년 3월 2일 印刷

1994년 3월 4일 發行

發行人 張 明 根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株)韓國컴퓨터産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 화 : 722-2901/3, 722-0163/5

등록번호 : 1981. 8.11 제 1-190호

---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값 2,000원

